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3年 12月 2日 (木) 午前10時17分

場 所 : 平昌郡廳大會議室

### 議事日程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 審査된案件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繼續) ————— 1 面

(10시17분 개의)

○ ~~委員長~~李相濂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명창군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10시20분)

먼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金學根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영목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인사)

환경지도계장 이영하 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인사)

폐기물관리계장 정대교 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인사)

저희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3개계 19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7명 현원입니다.

2명은 화공1명, 전기직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계에서는 8가지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번째, 환경보존종합대책 수립추진 두번째, 수계 권역별 환경기준달성 추진 전망, 연한오염방지에 관한사항, 환경보전및 홍보에 관한사항, 신고대상배출시설관리감독, 환경영향평가관련업무, 전시환경보존에 관한사항, 그밖의 타계에 속하지 않는사항을 환경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첫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및 행정처분, 방지시설비정상운영신고에 관한사항, 배출부가금부가및 환급처리, 비상분진관리, 연료사용제한에 관한사항, 배

출시설설치허가및 변경신고에관한사항 환경기술감독에관한사항, 배출시설관리인선임및 자가측정에관한사항,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생활소음방지, 산업폐기물처리에 관한사항을 환경지도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는 분뇨종말처리장지도관리, 분뇨오수정화시설 청사지도감독, 정화조설계시공업, 분뇨처리업소지도감독 축산폐수시설지도감독, 일반쓰레기분뇨처리종합계획수립, 생활쓰레기수거처리및 업소감독, 쓰레기매립장확보, 공중변소유지관리, 쓰레기정기수거제확립, 기타 폐기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장사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인력및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8개읍면에 46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11대, 물은박스는 28대, 환경측정장비로서는 자동차매연측정기1대 소음측정기1대, COHC측정기 1대, 기타 4대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三浦**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 山本** 이치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구한것이 없습니다.

○ **委員 山本** 송어양식장 운영관리 지도감독 말씀입니까?

○ **委員 山本** 요구한 자료가 출장을 갔을때 출장비지급한 지급명세나 지출부 사본하고, 증빙서하고, 출장복명서하고, 복명서가 없을때는 일지등 그와 유사한 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 **委員 山本** 자료를 당초 저희들이 냈는데 최종적으로 사무과에서 넘어온 서류에는 빠진것으로 알고 자료를 안넣었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 **委員 山本**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늘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제가 안보았지만, 축산과 같은경우에 송어양식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각읍면을 순회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3개월을 한번도 만나간 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는가 하면 92년도 출장비 지급에

의한 증빙서를 본의원이 검토를 하니까 5월부터 3개월을 만나갔습니다.

조금후에 그말씀을 축산과에 드릴려고 하지만, 그렇게 만나가서 지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출장을 나갈때 출장나갑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들어와서 복명을 하는데, 복명을 할때 경미한 관계를 구두로도 복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은 기록관리해서 문서보존년수에 의해서 보관하면서 필요할때 수시로 열람하는 복명이 되어야 될텐데, 복명이 축산과에는 잘안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지관리하는 복명서가 있습니까?

○ **委員 山本** 출장명령서 바로뒷장에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것은 출장명령부에다 즉시 복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별도로 복명서를 작성 해서 사안에 따라서....,

○ **委員 山本** 여기는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군수님까지 보고드릴 사항은 군수님까지 보고드리고 부군수님전 결사항에 대한것은 부군수님 결제를 맡아서 보관해 둡니다.

○ **委員 山本** 금년도에는 몇회나

하셨나요?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금년도에는 주2회정도는 나갔습니다.

그런것이 있습니다. 정식출장명령에 의해서 가는것이 있고, 또 가까운 거리에는 외출명령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기록이 안된것이 있을 겁니다.

○ 李致玉 委員 어떻게 다니셨던지 철저히 감독을 하셨겠지만, 사실 잘안되고 있는것은 과장님도 잘아시잖아요.

○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그렇습니다.

○ 李致玉 委員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朱泰元 委員 주태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관내 청소인력의 환경미화원이 자료에 보니까 평창은 13사람이나 되고 그 외 대화, 진부, 도암은 7명, 그런데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은 물론 쓰레기 처리량이 면세가 약하다 보니까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열악한 인원을 배치한것 같은데, 이 인원가지고는 요즘 이렇게 적은면도 능춘쓰레기 까지도 차가 순회를 하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사회풍조가 이렇게 힘들고 천한 일은 서로 안할려고 하는데 이적은 2사

람이나 3사람가지고 하루종일 쓰레기를 수거한다라고 한다면 이사람들이 있는곳은 고통스러운 일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창읍을 보았을때 군에 2명까지 포함하면 15명인데 아무리 적은 면이라도 5분의 1밖에 안되는 량은 아니거든요.

2사람 3사람 배치되어 있는 4개면에 대한 환경미화원을 더 증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자료 9페이지에 관내 주요하천수질검사결과를 보니까 미탄이나 방림,계촌,봉평,면은천같은곳은 변화가 없는데 봉평 흥정천하고 용평 속사천이라던가 진부 척천 합류지점 같은곳은 한달동안에 1급수에서 2급수가 되고 2급수가 1급수가 된다는 것은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지, 이렇게 월별로 급수의 기준이 변화가 되는 요인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대장균이 많고 적고 한데 봉평 흥정천만 보더라도 9월달은 30인데 대장균 숫자를 말하는 거지요?

10월에는 240이나 됩니다. 8배가 되지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수집이 그렇게 한달동안에 특이한 요인도 없는데 변화가 온다는 것은 수집검사에서

형식적인 검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환경이 변화가 있어서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redacted] 환경미화원 관계는 저 자신도 인원이 부족하다는것을 느끼고 작년부터 저희가 증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정부 들어오고 부터는 총정원제로 묶여서 일용직이라던지 이런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18명정도 증원을 해서 적은면에 2사람씩 증원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계속 증원할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redacted] 전혀 인원증원이 안 되면 현원가지고 활용을 하는데도 안배를 좀 하셔야지요. 평창같은곳은 아무리 읍소재지라 해도 15명이고 적은면은 2사람 3사람에 불과한데, 안배가 안되고 같은 미화원인데 읍에서 하는 사람들은 군청까지 할하면 15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하는데 읍면에 그 전 같으면 소재지만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농촌의 농로가 다되어 있는 마을까지는 전부다 수거 합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거리관계라던가 모든면에서 오히려 일거리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조치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수집관계는 저희들도 정확한 원인규명을 현재상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회 더 검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과정이라던지, 이런것에서 소홀해서 검사가 제대로 안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서 채수하는 과정은 철저히 소독도 하고 해서 합니다만, 2-3회 더 검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대장균 수치가 특별한 하천에 오염이라던가 원인이 없는 사항에서는 그래도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해야 검사결과를 믿을수 있는것인데, 한달동안에 8배가 늘어났다면 누가 인분통을 하천에 부었다면 몰라도

○ [redacted] 저희들도 검사를 직접 군에서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물라도 검사는 전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단지 저회들이 채수만 하니까 분석은 되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사람하고 가속의 분뇨가 주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것이 판단이 안되었습니다.

2-3회 더해보고 경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redacted] 알았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회 의회 의정보고시에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평창읍사무소 현관에 들어가는데 평창읍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직제편성표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그당시 본위원도 보았고 동료위원도 보았는데, 조금전에 주태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관계를 심도있게 얘기한바 있습니다.

평창읍이 13명이고 다른곳이 7명씩 하는 곳이 3개면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정원조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이것을 안하시면 여기서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94년도 정기예산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것은 짚어 보겠습니다.

읍면과 전화로 연결을 하시던가 높은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원조정 해주셔야 됩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의정보고회 할때 현관에서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하고 13명하고 차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본군에서 이것을 환경미화원 증원시킬때 평균군청소재지는 크니까 한사람 더주고 한사람 더주고 하다 보니까 13명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원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운영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되가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안해주시면 94년도 예산심의시에 문제를 제기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주십시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조정을 할수 있는지 여러가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redacted] 지금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고 조정하는 안을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redacted]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된 서류에 보니까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한 내용이 미탄, 대화, 진부동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아침에 차를타고 나오다가 방림3리 멧다리 일시쓰레기 매립장에서 차를 정지시켰기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방림3리 주민 남,여,노,소 할것없이 대부분의 주민이 거의다 노면에 황덕불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문을 전부 걸어 잠갔어요.

요구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곳으로 해달라, 여기에 버릴수 없다" 해서 제가 "군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하고 급히 나왔습니다만, 왜 이러한 주민의 욕구가 자꾸 생기겠습니까?

4개면은 쓰레기 매립장에 예산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작은면들은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시정이 안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향후 투자계획이 있으

면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데모들을 하는것을 보면 이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고 겨울철에 한가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가지고 데모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 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일이 있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것은 군비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2억5,000만원은 군비지요?

○ [redacted] 네 그렇습니다.

○ [redacted] 2억5,000만원씩 투자해 하면서 방림면은 안됩니까?

나와서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림3리 하천에 하천부지를 연간 35만원씩 면에서 돈을주고 임시 포크레인으로 파고 쓰레기장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파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철에 세수를 할수 없답니다. 세수를 하면 전부가 바이러스가 걸려서 결국 안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채소값이 없고 의욕이 없는데 쓰레기장은 당연히 철거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십시오.

○ [redacted] 금년도에 4

개면을 위생처리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만 방림하고 봉평, 용평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4-5년 내지 10년까지 버릴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서 년차적인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읍면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redacted] 과장님 명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가 원안이 다 만들어져 있고 본인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언제 합니까? 명년도 추경에나 반영이 되서 해결이 되면 모를까 그전에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굉장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방림면 방림3리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주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 관내 주요하천수질점검 결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치는 한번만 검사한 것입니까?

○ [redacted] 9월에 한번 하고 10월에 한번했습니다.

○ [redacted] 수치가 1급수에서 3급수까지 나와 있는데 도암지역을 보면 황계천은 삼양축산, 한일농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이 업체들한테 강력히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책으로 지시 지도한 내역이 있습니까?

○ [redacted] 네. 있습니다.

○ [redacted] 몇번이나 했습니다?

○ [redacted] 삼양축산, 한일농산 황계지역에도 송어장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주1회정도는 꼭 가서 지도를 하고 전체럼 무단 방류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1회정도 계속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 [redacted] 그럼 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것이 있나요? 수질이 계속 이렇게 나쁜데...

○ [redacted] 원천적인 봉쇄는, 법을 따지게 됩니다만, 법상으로는 지금 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해놓은 자체를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지도를 했지 그이상 방지시설을 하라고 할만한 모델도 없고, 또 법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양축산이 없어야 하는데 없앨수 있는 그러한...

○ [redacted] 축산폐수가 내려와서 수질이 오염되서, 그것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법이 없습니까?

○ [redacted] 삼양축산과 한일농산에는 방지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redacted] 개울로 내려 보냅니다.

○ [redacted]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5월인가 한번 사고가 나서 고발도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방류를 한다면 적발되면 저희들이 위법조치를 합니다만, 지금 방지시설 자체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완고한 방지시설을 할수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송천의 물이 못쓰게 되어 4급수가 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사람들 축산폐수가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는데 고발해서 어떤 정화시

설을 하던가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계속 할수없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렇다면 수질검사를 왜 합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조치가 되어 하는데 조치가 안되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redacted] 실지 가서 지도할 당시에는 방류하는것을 보지 못하니 밤을 세워 지키고 있던지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 [redacted] 그렇게 해서라도 적발 해야지요. 어느정도 2급수나 이런정도 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사람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냥 무겨놓았다가 파올려서 초지에 올라가면 그냥 위에다 뿌리니 겨울철 끝나고 봄이면 다내려옵니다. 또 도랑옆에 쌓아 놓습니다.

과장님 송천을 1급수로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 [redacted] 1급수로 만든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 [redacted] 다음은 송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것 보면 송어장 5개소는 칩전지가 잘되었다고 하고 미설치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5개업체

는 침전지가 다 있습니까?

○ [redacted] 네. 있습니다.

○ [redacted] 원복수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redacted] 원복수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 [redacted] 사용합니까?

○ [redacted] 사용합니다.

○ [redacted] 과장님 언제 가 보셨습니까?

○ [redacted] 9월달에 갔었습니다.

○ [redacted] 제가 가보았습니다.

○ [redacted]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침전시설이 아니고 비어있는것은 건조장입니다. 찌끼를 걸어내서 그곳에 다 말려서 농지에 퇴비로 옮기기 위한 건조장입니다. 그곳에 물을 대는것이 아닙니다. 침전지는 위의 큰 탱크가 침전지 입니다.

부군수님과 제가 직접 확인 했습니다.

○ [redacted] 침전지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설치5개소로 해놓았는데 앞으로 하는것도 잘해서 침전이 되고 넘치고

흐르고 해야 되지 지금말씀대로 이런것이 나와서 하천이 오염이 다되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법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질이 다 오염되어서 물이 다 썩어도 환경보호과에서 도저히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뒤에 보면 회동 송어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2-3회 수질 검사를 실시한 후에 분석을 해봐야 안다고 했는데 한번밖에 안했습니까?

○ [redacted] 한번 했습니다.

○ [redacted] 회동천을 한번 했습니까?

○ [redacted]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수질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그 송어장 때문에 작년, 금년 계속 회의때마다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와서 수질검사를 한번만 해보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송어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redacted] 회동 송어장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만, 시

설 문제라던지 그런것은 축산과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시설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수질오염이 되서 3급수로 나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치가 되어 할것 아닙니까?

○ [redacted] 지난번에 가 보셨지만, 침전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부족한것 같아서 더 확대를 하던지 하도록 업주한테 지도를 하고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없앤다고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팍문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부의 오수처리장 설치가 몇일전에 사업을 착공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배수관 설치를 제방안쪽으로 계획이 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몇몇사람의 토지승락을 받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설계를 변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언제쯤 완공을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먼

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진부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하고 평창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1일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미화원이 곱이 넘습니다. 평창에 미화원이 왜 많은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redacted]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이고 저희가 금년말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더 견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월을 해서 내년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 [redacted] 물론 이월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수관을 밖으로 해야 된다고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 [redacted] 시설 장소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관로매설 하는것은 일부 변경이 됩니다.

○ [redacted] 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까? 승락을 받지 못해서..., 그럼 제방 밖으로 할수밖에 없는데, 고수부지에 할려고 엄청난 땅에 흙을 쌓아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某** 기술진하고 저희 실무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 **郭某** 밖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某** 당초에는 제방 밖으로 할려고 했는데, 제방안으로 변경을 해서..., 하천입니다.

○ **郭某** 개인토지가 있기 때문에 승락을 저희가 몇번 갔다가 못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某** 미화원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디다만, 조정하는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郭某**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평창읍이 인원이 많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某** 그 역사를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청소차가 평창, 진부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부에는 도암까지 커

버를 하고 평창에는 미탄, 방림, 대화까지 들어가서 수거를 해왔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주민생활과 관계가 있고 문제가 되니까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청소차도 구입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평창에 자연적 인원이 늘어났고 또 지금은 보수가 그래도 괜찮습디다만, 전에는 사실상 인건비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싫어하는 일이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평창읍에는 인원이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일용직을 타읍면으로 우리 공무원 처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을 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자연적 평창읍이 인원이 많아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정을 한다는것도 사실상 평창읍의 인원을 감을해서 다른읍면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사람들을 과연 주거지가 평창인데 청소부를 하기 위해서 진부나 봉평가서 근무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것도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郭某** 김낙운 위원입니다. 위생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료 징수 기

준이 있지요? 기준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redacted] 위생처리장 수거료가 18 l 당 187원을 받고 있습니다.

○ [redacted] 평창읍 전지역이 공히 똑같습니까?

○ [redacted] 네. 그렇습니다.

○ [redacted]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redacted]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 [redacted] 수거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 [redacted] 5개 업소입니다.

○ [redacted]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redacted] 평창2개소 전부 3개소입니다.

○ [redacted] 진부에서도 이쪽으로 다들어 오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분뇨생산량 대비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 [redacted] 487 kL를 처

리했는데 1일평균 15kL 정도...,

○ [redacted]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분뇨량에 대비해서 처리되는것이 얼마정도나 되는겁니까?

○ [redacted]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 [redacted] 다들어오면 용량하고 맞습니까?

○ [redacted] 용량이 조금 남지만 앞으로 봐서는...,

○ [redacted] 지금처리되는 50%의 나머지 50%는 어떻게 처리되는거지요?

○ [redacted] 나머지 50%는 오지지역, 농촌지역, 이런 재래식 변소여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 [redacted] 지역별로 예전같이 재래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아 두었다가 장마철에 떠내려 보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redacted]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redacted]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가장 주원요인이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주로 송어장이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농수 축산으로 인한 분뇨처

리관계, 그다음 농경지의 비료나 농약이  
나, 또 발효되지 않는 퇴비문제가 되고  
그 2가지보다 가장많은 수질오염의 원인  
이 생활하수라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 [redacted] 네. 그렇습  
니다.

○ [redacted] 생활하수가 잘아시겠  
지만 화학세제를 집집마다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고, 또 마  
울마다 보면 가축들이 없기 때문에 음식  
찌꺼기도 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들이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축산분뇨에 대한 여러가지  
위생처리라던가,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경지  
에 대한것은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활하수는 앞으로 지도영향에  
따라서 어느정도 사전에 예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대폭 확충이 되어야 겠고, 또 가정  
에서 생활하수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가정에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겠는데, 앞으로 오수처리장 시설  
계획, 제가 보기에 는 매년 한두곳을 하

고 있는데, 시설투자가 미약하지 않은지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하  
면서도 시설투자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  
냐 하는 여론도 있는데 과장님 오수처리  
장 시설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redacted] 저희군에 금  
년도 처리시설까지 해서 3개소가 있고  
명년도에는 동산리 민박촌 부근에다 할  
계획으로 도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도비50%를 보조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다 하수도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박촌에 오수라던지 그런것이  
많이 생길것 같아서 그곳에 시설을 해볼  
까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 [redacted] 내년도 계획입니까?

○ [redacted] 네. 사실상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비를 예산이 허용하  
는 범위내에서 많이 책정을 해서 용량을  
큰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도 많이 투자가

안되고 해서 아주 특수한 처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량도 키워서 하는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redacted] 환경처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 [redacted] 전혀 없습니다. 환경처에서는 각 기업체같은곳에 다 시설하는데 환경부담금 같은것을 융자해주고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는 전혀 지원해주는것이 없습니다.

○ [redacted] 자금이 문제가 되면 지금 상수도료나 하수도료 같은것을 받아서 그것을 적립을 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을 할수있는 그런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 [redacted] 앞으로는 하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시설 완공이 되면 그런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하수도료를 받고 이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아직까지 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redacted] 그럼 하수도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도 하수도세를 받아서 하고, 처리장도 그것으로 하고, 군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활하수에 대한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었다고 보지만, 이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이지요 자금이 없다고 무조건 안할것이 아니라 어차피 자기가 버린 하수에 대한 어떤 부담금을 낸다하는 측면에서 주민부담이 조금씩 되더라도 군비를 보태서라도 그런 처리시설을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려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없습니까?

○ [redacted] 하수도세를 받는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redacted] 협조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수 있으면 제정해서라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이 아주 미흡한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자원도 부족하고 한데, 이 자원 재활용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예산도 보면 약 예산일부가 세워졌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용지제작에 800만원하고, 분리수거용 비닐제작에 500만원해서 예산도 세워졌었는데, 아까운 예산만 자꾸 허비할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홍보하고 지도해서 정착이 되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4개소를 2억5,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은 5억이상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 **환경보전국장 김영권** 4억이 부지매입비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진부면, 도암까지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도저히 평창읍에서 감정까지 해놓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일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다른사업비로 돌아 왔습니다.

○ **환경보전국장 김영권** 추경때 돌아갔습니까

○ **환경보전국장 김영권** 네.

○ **김영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권** 진부에 설치하고 있는 1일처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전국장 김영권** 250㎡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영권** 박용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인분처리장이 마지막 찌끼를 모아둔 것이 비료용으로 쓰면 좋지 않겠는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너무 독해서 약물처리를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전국장 김영권** 우리가 처리대책이 고심이 되는데, 먼저 위생처리장 시설이된 시군에 견학도 가서 확인도 했는데 어떠한 약제처리를 해서 퇴비화를 하면 좋다는 얘기가 과수원 같은곳은 가능 하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서로 가지고 갈려고 했었는데, 다른 곳도 보니까 한번써보고 안쓴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농가에다 마을대표 주어서 나중에 작물이라도 안되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얼마전까지

만해도 과수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했는데, 앞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가지고 가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버릴일도 사실 문제입니다. 다른곳에서도 농민들 다른 곳에서도 농민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당초에 기호가 좋으면 파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냥줘도 농민들이 안가지고 갑니다.

○ [redacted] 성분 검사를 해보았습니까?

○ [redacted] 성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 [redacted] 무슨 화공약품 처리해서 어떻게 비료대용품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해서, 농가에서 써보고 질이 좋다고만 소문이 나면 서로 사갈려고 할텐데...,

○ [redacted]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도소 같은곳에서 시범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우선 연구해서 가능한 농민들한테 피알하는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민들보고 가지고 가라고 강요도 할수 없고 농사 안되면 문

제가 생길것 같아 처리대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심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그 오니를 말이지요 멀지않으니까 조금 채취해서 주시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 [redacted] 그러겠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보충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濤** 산업과장 김시한  
입니다.

산업과소관업무 보고및 감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실  
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장하진 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인사)

다음 농사계장 이영균 입니다.

(농사계장 인사)

농산물유통계장 김인섭 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인사)

양정계장 황보한 입니다.

(양정계장 인사)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계로서 정원13명에 현원13  
명입니다.

고용직 1명포함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  
다.

분장사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 과업무 계획및 농업금융알  
선, 농사부업, 성장작목단지, 농촌근대  
화추진, 농업기상, 농지관리등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사계는 식량작물및 원예작물 전  
반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가공  
산업및 판매장 운영관계를 취급하고 있  
습니다.

다음 양정계는 양정업무에 대해서 일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사무감사는 유인물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페이지 이후에 감사자료 요구  
사항은 11건이나 4건 비닐자동화시범사  
업은 지도소 소관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 **委員長 李相憲** 산업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致玉 委員** 이치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농지일시전용허가 현황에 대해  
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일먼저 질  
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지일시전용은 제도나 법적근거에 의해  
서, 적지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곳에다 농  
지일시 전용을 했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주민전체 봉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주민을 전제로 해서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봤을때는 거꾸로 생각해 봤을때 많은 주민을 필요로 하는 행정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승인을 했다, 또는 각종 수수료및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산업과장님께서 물고자 하는 사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평창군 미탄면은 특히 송어장 때문에 그렇게 300여호가 생활을 못하고 불편을 느낀다고 수차에 걸쳐 군정질문도 했고 또 주민들도 직접 군수님을 만나 뵈기도 했는데, 이 치어장 사육을 위한 허가를 해준다면,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제반규정을 적용시켜서 해줘도 되는 것이니까 해줬겠지요. 그런데 송어장 치어를 사육하는데나 송어장 허가를 해줄때는 복합민원이 되어가지고 건설과, 산업과, 축산과, 환경보호과등 협조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협조를 해줘서 과연 미탄에 치어

장을 해줘서는 안될텐데, 우리 산업과에 각종 규정이나 일시농지 전용허가 승인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해줘야 하는데, 본인을 설득을 하던지 또는 여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미탄 창리 300여 주민을 생각했다면 보류할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보니까 이허가를 시작이 2 건다 3월 29일이고, 95년, 93년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농지조성비도 징수해서 수납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전용허가한것은 좋은데, 미탄면장이 복명서의 의견서에다가 치어를 겨울철에 시작해서 봄 모심기전에 생산하니까 농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복명을 해서 그런등등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치어장 일시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해당과하고 협조를 했나요?

본위원도 해당과에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 [redacted] 없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전체주민이라는 개념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송어장 오수로 인한 오염에 대한 군정질문을 과장님도 참석했을때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한번정도는 언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건설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축산과에 협조를 해서 전용 허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외골길로 내업무니까 "나는 허가해주면 그만이다, 축산과나 환경보호과는 어떻게하던지 사후처리는 저희들이 할 것이고 우리는 모른다, 대체농지조성비 징수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뜻 같습니다.

말씀좀 해주십시오.

○ [redacted]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 처음에도 말씀 드렸습니 다만, 농지일시전용 허가는 농한기에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면장의견서에 있다시피 벼를 심을수 있고 하니까 해드린것이지, 그리고 치어사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어사육하는데는 수질오염관계는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또 농지일시전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관장할 사무가 아닙니다.

농지일시전용을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것을 안해줄수도 없고.....,

○ [redacted]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답변내용이 저하고 상이합니다.

산업과에서 해줘야할 허가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 허가를 해주기 전에 협조도 하고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오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것을 하셨는지 물었잖아요.

○ [redacted] 해 봤습니다.

○ [redacted] 해봤는데 표현을 했 습니까?

○ [redacted] 본인한테 했습니다.

○ [redacted] 이 업무는 복합업무 아니까, 여러곳에서 승인을 하고 최종결심을 군수님께서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까? 그러면 협조도 하고 미탄 지역주민이 그렇게 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이렇게 금년도 3월29일날 전용허가를 안하셨을 겁니다.

민원실에서 공문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 [redacted] 3월20일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러니까 20일경에 되었다면 9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원인에게 미탄지역에 오염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양보할수 없느냐, 물론 소득과 연계되니까 한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5월이나 6월에 해졌다 하더라도 말안하겠습니다. 불과 9일만에 그 중요한 주민들이 생활을 못한다고 하는데, 저도 본인한테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언제 접수를 했느냐, 언제 승인 받았느냐, 누가한테 얘기했느냐 등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군립해서 있는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평창군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될텐데, 그냥 규정이나 법에만 지중을 해서 들어오면 내책임만 없으면 승인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얽히고 설키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축산과장께서는 지금 무슨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편에 들은 얘깁니다만, 대체농지조성비를 3월달에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라고 해서 건설과 유수인용허가 담당계원에게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산업과에서 농지 일시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축산과장이"가"라고 해서 건설과에 보냈는데, 우리는 어떻하겠습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이해도 시키고 군의원한테

도 얘기를 하고 미탄면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해야 할텐데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수인용허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달을 끝다가... , 그래서 본위원이 이 관계를 부군수님께 유선으로 "이래서 되겠느냐 이 오염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잘모릅니다. 관계 과장님 계장님으로 구성된 몇분들을 차용담씨한테 미탄에다 보내서 그것을 이제 철회해달라" 하셨다 합니다.

산업과에서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 [redacted] 제가 갔었습니다

○ [redacted] 그곳에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 [redacted] 종용하러 갔었습니다.

○ [redacted] 왜 주민 대다수의, 많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얘기 아닙니

까? 우수인용 허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웃의 친절한 사람들이 있으니  
도장을 찍어 주는 겁니다. 한 20명 받  
았다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고 이  
제는 할수 없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오염이 되어서 생활을 못하게 되  
어 난리를 격는데 허가를 뒤로는 해주니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94년도 계획에 보면 봉평의 메밀가공공  
장을 하나 설치하고 진부에 약초공장,  
김치가공공장을 회원조합 연합회라 해서  
세가지를 봉평에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치가공공장 회원조합연합회라  
는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진부입니다.

○ 김치공장하고, 약초  
공장은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이 많이 되  
니까 가능합니다만, 메밀가공공장을 봉  
평에 세우는것은 년중 가동할수 있는 량  
을 확보할수 있습니까?

○ 이것은 봉평농협  
에서 계약재배로 해서 할수 있는 사업으

로 들어 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평창군에 봉평이 이효석 메밀꽃필  
무렵이라 해서 유명합니다만, 평창관내  
에 메밀 량이 상당히 부족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  
장을 설립한다면 년중 어느정도 가동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량이 그만큼  
재배할수 있는량을 보충할수 있는나가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네. 봉평농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진부의 약초가공공장은  
어느정도 어떻게 가공을 할수 있는지  
약초를 매입해서 건조해서 썰어서 내는  
겁니까? 어느정도 가공합니까?

○ 썰어서 절단,포  
장까지 입니다.

○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 관계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주태원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권에 13페이지에 자동화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엄청난 도비와 군비, 또  
농발기금등을 보조한것이 있지요?

기타라는것은 자부담을 말하는 거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그런데 상당한 돈을  
무상으로 보조해준 거지요?

이것이 용자가 아니고 보조이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그런데 육묘를 생산  
해서 관내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 것은 그목적이지....,

○ [redacted] 네.

○ [redacted] 그런데 육묘값이 이  
렇게 많은 액수에 지원을 해서 육묘생산  
을 하면 저렴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가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국고나 군비를 투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농업에 도움을 주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좋은 육묘  
를 생산을 해서 농업에 발전을 기해야  
겠다는데 있고, 또한가지 목적은 소득증  
대에 목적을 두는건데, 육묘생산과정  
에서 육묘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용하  
기가 힘들다 이런얘기가 되지요. 그래

서 육묘장에서조차 당초의 목표대로 하지  
않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꽃묘생산을  
한다던가, 별도로 다른생산을 하는것으  
로 알고 있는데, 가격조정을 본군에서  
할수 있는지, 그냥 막대한 국비나 군비  
를 투자해서 한 특정인이 맡아서 하는데  
도 한개에 100원을 받아도 그만이고,  
1,000원을 받아도 그만인것으로 방치해  
두는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고요, 그다음 93년도 영농후계자 선정과  
정에 상당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본위  
원이 궁금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부적격  
자가 선정이 되고 적격자가 선정이 안되  
었다는 여론 때문에 여기에 대한것을 알  
고 싶은데 여기에는 전부 선정된 사람은  
적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을 자  
세히 모르겠는데 당초의 심의과정이 면  
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겁  
니까? 아니면 지도소로 바로 신청을 하  
는 겁니까?

○ [redacted] 면사무소를 통해  
서 합니다.

○ [redacted] 그런데 전에는 농촌  
지도소에서 했는데 언제부터 산업과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 [redacted] 아닙니다. 지금

도 농촌지도소에서 선발을 해서 선발인원을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선발인원의 120%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100명이라면 120명을 지도소에서 확정해서 120명중에서 다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당초에 기초자료는 산업과에 없겠네요?

○ [redacted] 네. 없습니다.

○ [redacted] 농촌지도소에 93년도 영농후계자 신청 기초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명단과 모든 심의한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심각히 불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슴도 축산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가지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것은 93년도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이 전업이 슈퍼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든인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슴몇마리 산밑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설운동장에서 후계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사람이 후계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잘할려는

지 모르나 당장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도소나 관청에 자주 드나들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럼 그사람이 봉평에 와서 농업경영이 있는가 하면 제가 봤을때는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제가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기대를 농어민후계자에게 농촌문제를 맡기다시피 하는 기대밖에 없는데, 선정과정시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고 하게되면 앞으로의 농촌문제가 더 어려워 질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후계자들로 선정된 사람도 농업을 안하고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일부 농업은 부업으로 하고 다른 업으로 종사를 하거나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철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원화가 되서 지도소에서 120% 범위내에서, 산업과에서 그것만 가지고 심의를한다라고 하게되면 어려움이 있긴 있네요. 기초자료를 안가지고 그곳에서 선정해 보낸사람만 가지고 하니까..., 앞았습니다. 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산업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으므로 중식을 한 다음 과장님의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으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증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오전에 주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옥묘생산공급가격을 말씀드리면 배추는 주당 18원에서 20원, 고추는 40원에서 60원, 양배추는 20원에서 25원, 상치는 18원에서 20원씩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에 영농자금료 및 협정가격을 결정해서 농민이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정가격을 정하

겠습니다.

○ [redacted]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들은 질의시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산업과에서는 감사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서 고맷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 [redacted] 93년도 도암면 원예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과물 유통사업시설과 진부농협에서 공동퇴비제조장, 그 사업진도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redacted]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공정이 50%입니다. 기계설치는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올해는 건물만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선정관계로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부에 퇴비제조장 시설은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 [redacted] 왜 사업이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 [redacted] 부지선정을 4곳

을 했습니다. 그것도 퇴비제조장은 협  
오시설이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4-5곳에 부지를 선정해서 마지막  
에 삼강레미콘 건너편에 위치를 잡고 기  
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무리 지을수가 없겠습니다.

○ 郭文春 委員 이상입니다.

○ 金鍾永 委員 김종영 위원입니다.

냉해로 인한 피해농가 보상대책이 요즘  
달라진것이 없습니까?

○ 梁榮謀 課長 金時鏞 업무보고당시에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20억6,5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金鍾永 委員 농기계반값 공급에  
대해서 말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 梁榮謀 課長 金時鏞 음면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선 영세농가, 기계가 없는  
농가부터 심사를 해서 공급순위를 결정  
합니다.

○ 金鍾永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相薰 보충질의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아 있음 )

○ 委員長 李相薰 보충질의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

니다.

○ 委員長 李相薰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委員長 李相薰 지역경제과장님 발  
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地區經濟課長 朴榮濤 지역경제과  
장 박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  
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래 지역경제계장 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인사)

이순호 상공운수계장은 교통안전진흥공  
단에서 교육입교종이기 때문에 차석인  
이정춘주사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공운수계 차석 인사)

지역경제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경제활  
성화, 물가안정대책, 에너지소비절약,  
자동차등록업무, 교통안전시설확충, 공  
용주차장부지확보,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개계 15명으로써, 지역 경제계가 5명, 상공운수계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용직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대화, 진부, 도암, 각 1명씩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역경제계 업무보조요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계소관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중소기업육성지도 및 공장설립신고등록, 석유판매업 가스업관리, 연료수급 및 에너지소비절약,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운수계 소관입니다.

교통안전대책 및 벽지노선관리, 자동차운송사업 및 정류장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주정차 단속업무, 전기 및 광산관리, 계량기 및 공산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업체 관리로써 공장등록은 총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류가스업은 70개업소 중 주유소가 35개소, 이 중에서 영업중이 30개소, 공사중이 5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5개소로써 미탄이 1개소 방림 1개소, 진부 2개소, 도암 1개소가 있

습니다.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업은 30개업소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관리는 총 차량대수 6,269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용 차량이 312대, 비사업용 차량이 5,957대입니다.

전기공사업은 5개업체가 있습니다.

광산은 12개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고 총 광구 등록업소는 3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석탄이 86개소, 석회석이 103, 규석이 45, 기타 84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12개 내역은 석탄이 1개소, 석회석이 6개소, 규석이 4개소, 운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의 사업추진현황은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dacted]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본군 의회에서 의정보고시 봉평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중에 불법주정차

유도요원을 봉평에 배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저희가 주정차질서 확립차원에서 작년부터 면지역이 넓은 대화, 진부, 도암 3개소에 대해서는 1명씩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군청소재지인 평창읍에는 기능직 2명을 배치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개지역에서도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증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증원을 시킬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인원을 배치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인원이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redacted] 대화, 진부, 도암 3개지역하고 평창까지 4개지역에 주정차질서 단속을 해서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징수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redacted]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과태료부과건수가 891건으로 2,2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redacted] 5명이 하는 거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인원증가해도 되겠는데요. 보수문제 때문에 안되는 거지요?
- [redacted] 인건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 [redacted] 과태료가 군수입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주민의 편의라던가 사회질서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안하는것은 됩니까?
- [redacted] 월 어느정도 보수가 됩니까?
- [redacted] 1일에 14,000원 정도 되니까....,
- [redacted] 보수가 약하군요.
- [redacted] 하고 못하는것은 어떻게 되었던 이것을 유도요원이 없으면 이만한 군수입이 안되는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그렇지요.
- [redacted] 인원배치를 해도 충분히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는것도 안하



개소가 있는데, 제조업은 됩니까?

○ [redacted]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제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redacted] 알았습니다.

가스 집단공급이 5개소가 있는데,

○ [redacted] 집단공급소 5개소는 용평의 쌍용에 5개소가 있습니다.

○ [redacted] 고압가스 판매업 4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 [redacted] 솔라이트라는 것은 도로에다 야광비치는 것을 박은 겁니까?

○ [redacted] 도로에다 박은 것이 아니라, 커브에 짹짹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 [redacted] 도로에 박은 것은 됩니까?

○ [redacted] 도로에 박은 것은 표식병입니다.

○ [redacted] 그것을 작년도에 했

지요?

○ [redacted] 작년도에 1,182개를 시설했습니다.

○ [redacted]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 빠져 나가고 몇개 안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었습니까?

○ [redacted]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도로다시 덧씌우고 할때도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덧씌우기 할때도 많이 망가지고, 적재량이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대해서 늘려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redacted] 가정에서 쓰는 연료 중에 L.P.G 가스는 소비자 가격을 군에서 지정해 줍니까?

○ [redacted] 고시가격입니다.

○ [redacted] 본군의 고시가격이 얼마입니까?

○ [redacted] 9,200원입니다.

○ [redacted] 9,200원 고시가격은 거리의 제한이 없지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더 받고 있습니다.

○ [redacted] 오지가구 배달 추가징수 사례가 용평가스에서 3일간 행정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못받도록 지도합니다만....,

○ [redacted]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3일까지고 되겠습니까?

○ [redacted] 그럴 경우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일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아주 악덕입니다.

○ [redacted] 그런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redacted] 철저히 하십시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본 위원이 시정해달라고 몇년을 두고 얘기한것인데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백원 더받는것이 아니라 몇천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주차계도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사람들이 계도를 해서 상당히 주차단속이라던가 지도를 해서 상당히 시가지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사람들 받는 보수를 보면 평창읍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는 전부 고

용원으로 되어 있지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래서 이사람들이 앞으로 성실히 더 잘하고 더잘하므로써 그만큼 수입도 높아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redacted] 이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기능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사항인데, 기능직으로 할려면 T.O 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기능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 [redacted] 기능직 승인을 도지사한테 받습니까?

○ [redacted] 네. 기능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보너스 관계라던가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조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보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도 잘하는데 기능직으로 만들어서 더 잘하게 하는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朴榮源 이사항은 건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까.

○ 金鍾永 委員 그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쏠라이트, 경보등 설치에 나와있는데, 과장님 군내에 할만한 장소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朴榮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경보등설치를 5개소 하고 안내표지판 할곳을 해서 예산확보를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명년도 사업에 5개소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朴榮源 다 안서고 1개소하고 표지판하고 해서 4,8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암면지역 지방도에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대관령 올라가다 보면 고냉지 시험장 앞에 다리가 커브가 저서 계속 들어오는 차가 박는데 다리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계속 얘기해도 경보등이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되었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를 찾아서 빨리 경보등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鍾永 委員 김낙운 위원입니다. 물가안정대책에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것이 커피를 비롯한 다방에서 파는 차종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상이한데, 그것을 군에서는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金鍾永 委員 커피는 원래 자율가격인데 저희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적용해서 인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700원 받는곳도 있고 800원 받는곳도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1,000원 받는곳도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매월 받는데 1,000원받는곳은 읍면에서 올라온것도 없고, 저희도 파악된곳이 없습니다.

○ 金鍾永 委員 그럼 그기준 이상 올라갈때는 단속을 하고 조정할수 있습니까?

○ [redacted] 환원시키도록 조정을 해야지요.

○ [redacted] 업주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을 가지고 할수있단 말이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그다음 영업용택시차고지현황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1대당 차고지가 몇㎡이상 있어야 됩니까?

○ [redacted] 13㎡이상 있어야 합니다.

○ [redacted] 그럼 차고지 현황이 13㎡이상 다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지금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차고지는 있되 차고지에다 차량을 입고하지 않고 기사들이 차를 자기 자가용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 [redacted]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행정처분을 한것이 아니라,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본인들 소유의 땅

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인들하고 가격차이도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활용을 안하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우선 운전기사들이 자기의 편리 때문에 입고를 안시키고 자기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타고나오는 문제가 생겨서 일일입고를 이행을 안하기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redacted] 몇회 했습니까?

○ [redacted] 차고지관계로 행정처분을 한것은 금년도에 1회를 했는데 평창택시에12대, 진부의 삼일택시3대 해서 15대를 처분했습니다.

○ [redacted] 지금도 행정정지가 되어 있는것이 다섯대가 있는데,

○ [redacted] 그것은 차고지관계 뿐만아니라 지입차량 관계때문에

○ [redacted] 지입차량이 뭐예요?

○ [redacted] 지입차량. 그관계 때문에 29대를 행정처분했습니다

○ [redacted] 지금 어때요? 차고지 입고는 제대로 되고있습니까?

○ [redacted] 차고지 입고는 평창택시의 행정처분 이후로부터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상당한 불만의 요소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었나요

○ 불만의 요소  
가 타협이 잘되어서요.

○ 그다음에 지금 행정조  
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행버스 노선변경을 도에다 제의하신것  
으로 알고 있는데, 속사에서 장평구간,

○ 국도 세군데  
를 정차하는것을 도에 공문발송을 했습  
니다.

○ 언제 올리셨나요?

○ 한 삼일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저희한테  
도 공문을 올려달라는 연락이 와서 올렸  
습니다.

○ 도에서는 언제쯤 확실  
한 대답을 들을수 있을것 같아요?

○ 언제쯤 된다  
는 확신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  
만 그것에 대한 회답은 곧 올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올려만 놓고 계시지  
마시고, 관철이 될수있도록 계속 촉구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교

통불편에 대한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한가지만 더  
들어봅시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증차가  
몇대 입니까?

○ 금년도에 개  
인택시 증차는 2대가 심의 중에 있습니  
다.

○ 아직 발표는 안나고요  
그것이 2~3 일내로 발표가 남니까?

○ 금년내로 조  
치를 할려고 합니다.

○ 알겠습니다.

○ 보충질의 없으십니  
까?

○ 있습니다.

주태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액화석유가스 고시가격을  
꼭 준수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사항을 본군에서 반상회 자  
료로 나가는 평창소식지가 있죠?

○ 에 있습니다.

○ 여기다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서 쓸수있는 정당한 값

이 얼마라는것을 알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세요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9,200원 이상을 더 달라고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바로 군에다 연락을 해달라 그러세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 순수한 주민들 고발이라는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가 어떤 손해를 봐도 고발을 안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달라고 홍보를 해주세요

부당이익을 취하는것은 좋은 일이 못되니까 빨리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심지어는 택시비가 6천원하는데는 여기다 6천원을 더 가산해서 받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만5천원 만6천원을 받는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장평에 택시주차장인가요, 분쟁이 되어서 도로에다 몇개월째, 특히 평창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관문정비를 해놓으니까 택시사업장이 되고 말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요?

○ [redacted]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택시업체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를해서 현지에 나

가 조사를해서 인도를 조금 줄여서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세우도록 2m 를 좁혀서 하도록 하는등 여러가지를 연구해서 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지않는것이 낡지않는가 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세워 놓을 부지확보가 상당히 힘든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전부다 차를 몇대 안가지고 있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비싼데 사서 할수 있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으로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고 저희도 손을 못대는 형편에 있습니다.

○ [redacted] 언제까지 도로에다 주정차를 할수있도록 방치해 둘것입니까 일반 서민들은 도로에다 차를 정차시켜 놓으면 딱지를 떼어서 과태료라던가 벌과금을 내게하고 영업하고 있는 차들은 영업목적으로 계속해서 몇개월씩 부지를 구하지 못한다고 매년 도로에다 주차장화 하는것을 묵인하고 방치할것입니까?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 [redacted] 단속을 해야되는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과 업체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 [redacted] 전에도 택시가 가드레인 안에 넓은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했는데 이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임대료 안줄려고 길로 나와서, 임대료를 안주니까 땅임자는 임대료를 달라고 할수밖에 없지요. 임대료 안주고 남의땅 그냥쓰는게 어디있습니까?

그리고도 과다하다 어쩔다 해서 분쟁이 생기면 1-2개월 안에 어떻게 해결이 되야지 벌써 반년이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 기미도 없습니다. 도로에다 차를 세워도 괜찮으니까 임대료 안주고도 영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비싼땅 빌려서 임대료를 주면서...

주민의 편리나 교통안전은 아랑곳 없고 어떤목적이던, 어떤문제가 생겨도 영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요 업체가 영세해서 어렵다는 사정을 봐주는것은 좋지만, 그것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불편을 주는것은 한계가 있는것이지 무한계 저렇게 두면 몇년씩 그 업체가 풍부한 자산이 생길때까지 기다

릴 것입니까?

○ [redacted]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중에 있는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 [redacted]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단속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같이 찾아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원택시가 개인택시 하는분들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모여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물 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할겁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보증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redacted] 보증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축산과장 정의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영길 축산계장입니다.

(축산계장 인사)

김봉기 낙농초지계장 입니다.

(낙농초지계장 인사)

신상균 가축위생계장 입니다.

(가축위생계장 인사)

이어서 축산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축산현황, 내수면양식장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입

니다만,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축산과 직원현황입니다.

3개계에 과장을 합하여 9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현원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입니다.

축산사업의 종합계획 조정과 축산관계단체지도육성, 축산자금융자및 사후관리, 가축시장관리및 가축문제사업지도, 축산물유통개선업무, 가축개량및 종축보급관리, 증소가축장려사업, 내수면개발및자원보호관리, 내수면수산제조업관계사무,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 초지계입니다.

낙농진흥 일반사업과, 낙농단지육성, 유우증식및사후관리, 낙농기구구입및설치, 초지조성및사후관리, 대단위기업목장육성및관리, 관급사료배정및사료수급조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계입니다.

가축방역및진료위생일반, 동물병원지도감독, 수의약사감시, 축산물작업장경영에 관한 지도감독, 축산물유통및 단속,

가축방역간업무지도감독, 목장환경위생 관리, 작업사료증산지도및 사료작물재배 사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하 축산관계 기반현황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相燾** 축산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致玉 委員** 이치옥 위원입니다.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이것을 대사해서 볼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급대장은 사본을 안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자료명에 사무감사요구자료에 92,93년도 송어양식장 지도감독으로 인한 출장비지출내역(지급대장 증빙서) 출장복명서, 출장복명서가 없을때는 일지를 첨부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급대장 경리부도 사본한것이 없고, 출장복명서도 없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그렇습니다.

○ **李致玉 委員** "출장여비 미지급분 양식장운영관리지도내용" 이렇거든요.

그런데 92년도 본청및 읍면에 결산검사를 할때 본위원이 송어장 출장나간 내역

이 모호해서 뽑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왜 송어장에 지도감독을 안한날이 많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한때가 있는데, 여기보면 그때 92년도 결산검사할때 본위원이 이것을 기재한건데 6월달에도 한번도 안나가고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당해공무원이 출장을 명받아서 나갔다가 귀청해서 구두로 보고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송어장업무지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출장비도 안타고 또 여기 보면 그냥 지도만 했다고 기재했는데, 밑에 보면 이상한것이 출장여비 미지급분인 1일근무 상황부에 의한 양식장운영관리 지도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축산과에 만들어서 붙였는데, 1일근무상황부라는 것은 각부처 장관지시로 3년전에 폐기되고 출근부나 근무상황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무상황부라고 기재하셨는데, 이근무상황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외출타 승인기록부, 관내출타승인기록부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를 안하고 이렇게 기재를 한것 같은데, 1일 근무상황부를 무

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redacted] 1일근무상황부는 4 시간 이내에 관내를 출장할 경우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한 명령절차 보다는 1일근무상황부에 기록으로 사무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렇다고 봤을때 출장비가 축산과에 기획실로 영달받은 금액이 적어서 출장비를 못타고 그냥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과장님 승인을 받아서 직원들께서 나가서 했다는 얘깁니까?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근무상황부가 다른곳은 다 폐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있을까요?

○ [redacted] 다른실과소도 공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럼 이것은 그냥 지도감독하고 기재한것이군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한달에 몇회나 나갑니까?

여기 보니까 몇회 없는데...

○ [redacted] 말하자면, 내수

면 분야의 출장기록은 출장여비 지출내역표에 지시된 사항하고 지금말씀하시는 근무상황부에 기록된 사항하고...,

○ [redacted] 그러니까 한달에 3번 정도 나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redacted] 3번이야 더나가지요. 여비지급사항부에 나와 있는 사항만 따져도 그정도 되고 1일근무상황부에 달려있는 사항을 봐도 93년도 같은 예를 들면 금년 1월달에 2명이 14일을 다녀온 사항으로 실적이 됩니다.

○ [redacted] 가장 중요한것은 출장도 출장이지만, 조금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할때 그런말씀이 계셨는데, 여과시설을 하나도 이용을 안하고 그냥 두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점검한 특수한 점검기록부 같은것이 있습니까? 몇일전에 가봐도 원복수산 인근에 있는 송어장은 만들어 놓지도 안했지만, 그냥 또 점검나간다고 할때는 물을 틀어대고 사람이 갔다오면 물이 빠지고, 여과시설이라는 것이 그모양입니다. 그런것은 벌칙이나 벌과금을 부과한다던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redacted]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절차는 내수면 부서보다도 환경

보호과 부서에서 담당해야할 사무이기 때문에 ...,

○ [redacted] 유입세 같은것을 그곳에서 취급합니까?

○ [redacted] 아닙니다. 제세공과금 관계는 면장이 직접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redacted] 광문춘 위원입니다. 소진드기 구제사업실시에 소 실시두수가 34,350두인데, 평창군의 총 한우두수가 13,514두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34,350 두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 [redacted] 이것은 소한마리에 대해서 1차 축시에다 약육분무를 하고 3주후에 다시 재분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수가 기준이 아니라 연두수지요. 그러니까 10마리를 2번 했으면 20두로 실적을 잡도록 되었습니다.

○ [redacted] 좋습니다. 여기보면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총 마리수가 13,514면 2회면 끝이 되잖아요. 29,128두인데 계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 [redacted] 년 2회라는 것은

이른여름, 그러니까 생물이 나기 시작해서 방목장 들어갈때 한번하고, 그다음 가을철 방목이 끝나고 축사로 들어올 무렵에 한번하는 단위로 해서 년2회 실시인데, 한번실시할때 2번 뿌린다는 애깁니다. 3주후에 또한번 뿌리기 때문에 누계숫자로 따지면 4회를 실시하게 되는 거지요.

○ [redacted]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도 시설에 대해서 후평리 어도 시설을 한곳에 우기로 해서 증단을 했다가 다시한다고 하는데, 어도시설을 지금 어떤식으로 합니까?

○ [redacted] 지금현재 어도시설은 새로이 하천에다 보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 설치공사를 할때 동시에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종전에 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2개씩 해나가고 있는건데, 기존보의 연체를 30cm 가량 깨내고 물이 그쪽으로 갖혀 있던물이 그쪽으로 흐를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서 쪽 에이프런 쪽으로 양쪽에다 설치하고 계단식으로 하상까지 내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송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요?

○ [redacted] 네. 그렇습니다.

○ [redacted] 작년 예산에 보니까 한 400만원 들어서 20,000마리씩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만일 방류후에 측산과에서 생태계 같은것을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 [redacted] 생육사항은 사실상 조사 불가능 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10,000미 넣었는데 몇마리가 남았는가 하는것은 그런정도는 측정이 불가하고,

○ [redacted] 그것이야 몇마린지 헤아릴수는 없고, 고기가 얼마나 붙어났는지 알수 있지요.

○ [redacted] 성장이야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몇번이나 했습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 [redacted] 한 3년정도 지나면 25cm 정도 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도암면 병내천에다 방류한 송어하고 산천어를 도립 내수면개발시험장에 협조를 얻어서 무상방류했는데 특히 그쪽에서는 상당한 주민들이 재미를 보고 방류효과가 뚜렷하다고 계속 방류를 희망하고 있

지만, 관내 전 하천에 고루고루 방류를 실시하므로 치어의 방류는 못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평창강에 작년에 방류를 했지요?

○ [redacted] 네, 작년에 했습니다. 병내리는 제작년에 했지요.

○ [redacted] 잘크고 있다는 얘가지요?

○ [redacted] 잡히는 고기가 상당히 큰것이 잡힙니다.

○ [redacted] 알았습니다.

○ [redacted] 그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어를 자연수에다 방류를해서 크는것이야 잘크지요. 그런데 송어가 잡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천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 먹는데요. 씨가 마른다는데, 그런것은 한번 연구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 [redacted] 그문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역시 송어는 말씀하신대로 잡식성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하고 어린고기는 먹이로서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내수면내에 자라고 있는 고기중에 쏘가리를 비롯해

서 다른종류들도 역시 똑같은 습성이지요. 어느 제한된 수면, 그러니까 호수라던지 또는 저수지라던지 이런 제한된 수면에서 다른 어종이 산란해서 치어과정에서 미처 크기도 전에 잡식성 어종이 먹이로서 제공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방류하는 수면은 개방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물론 어린고기를 잡아서 먹기는 하겠지만, 기타 다른어종의 자원이 고갈된다고까지는 극단적으로 표현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redacted]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은 일반상식적이거나 학술적인 논리이고, 실질적으로 그런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해서 사실조사나 검토를 해본것이 있습니까?

○ [redacted] 그 우려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내수면 수산분야의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도청에 근무하는 내수면 분야 전문직한테 사실 자문도 받았습시다. 도내 다른 하천에도 도가 주관해서 매년 많은수량의 치어를 방양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보는 견해로는 하천에 방류할 경우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시다.

○ [redacted] 알았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업농 축산농가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1억5,000만원씩 지원한 내용 말입니다.

○ [redacted] 전업축산농가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 [redacted] 그 가구를 선정할때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redacted]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같은경우도 있고 다른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한우종합대책사업의 경우 한우사업에 5년이상 사육경험이 있고, 55세이하의 지역주민이 이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아울러서 본인이 5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같이 축산업에 동참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금년에 지원한 축산가구는 해당이 딱 맞습니까?

○ [redacted] 맞습니다.

○ [redacted] 누구누구인지 불러주시겠습니까?

○ [redacted] 우선 한우종합대책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농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종합대책사업은 협업체사업과 농가대책을 목장사업으로 우선 분류가 되는데, 협업체 사업으로서는 평창축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가목장 사업으로서는 평창읍 조동리에 정경화씨, 미탄면 회동리에 박화자씨, 방림면 계촌4리에 박경각씨 대화면 하안미3리에 김종석씨, 용평면 도사리에 이부한씨, 도암면 차항리에 김경래씨, 도암면 차항리에 김윤정씨 이렇게 7개농가가 한우종합대책사업 농가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 선도양축농가라 해서 분야별로 집중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농가는 92년도 선도양축농가로는 평창읍 하일리에 김영배씨가 낙농분야의 선도양축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93년도에 선정된 선도양축농가는 용평면 도사리에 김봉래씨, 도암면 차항2리에 김우남씨, 대화면 대화5리에 김재관씨등 3호가 금년도 선도양축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낙농인데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또는 새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됩니까?

○ [redacted] 현재 당해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안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시킬수 없습니다. 이왕 그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업화로 발전하고자 할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 [redacted]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차항에 김경래씨하고 김윤정씨하고 한우사육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상초지보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까?

○ [redacted] 한우종합대책사업은 한우사육을 위한 사육기반부터 시작해서 사육시설, 그다음 사육장비 일체가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redacted] 그사람들은 지금 그젓소를 사육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고 초지도 불실초지가 되었고 한데, 이자금은 보조하고 용자가 지원되는 겁니까?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런 그사람들이 한우를 키우고 있나요? 지원하는 농가를 선정하는데 여러가지

한우를 사육하고 이런 능가를 잘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사람들 지원해주는 그돈가지고 타목적에 사용해 버리고 한우사육도 안하고 또 몇년하다가 이렇게 안됐다 해서 말고, 지금현재 우리군에 초지가 많습시다만, 전부다 그런형태 아닙니까? 많이 지원받아서 돈 때문에 초지조성 한다하고 해서 다 팽개치고 부실초지가 다 되었잖아요. 이런식이 안되겠습니까?

○ [redacted] 최근년도 부터 지원되는 축산사업분야는 종전식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일시에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주는것이 아니고 사업의 진도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진도비율에 따라서 축협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주어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부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 [redacted] 92년 이전까지는 주어진 자금을 융자절차만 완료되면 우선 선지급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93년도부터 융자금 같은 경우 사업진도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사업진도에 따른 배정때 대출 가능범위를 설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축협이 지급하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철저히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역시 사업진도 사항이 확인된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 자금만 수령하고 사업을 목적대로 수행하는 일은 절대 없을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이 일단 시작된다음 중단하는 경우는 발견하는 즉시 지원자금을 전액을 일시 상환회수하도록 강경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사업으로 자료를 보면 92년도 군내에 소전염병 992두를 예방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redacted]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말씀입니까? 992두 했습니다.

○ [redacted] 군전체를 봐서 소두수가 얼마인데 이것만 예방해서 되겠습니까?

○ [redacted] 물론 절대수에

에 부족하겠습시다만, 전염병 종류별로 연중 방역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같은 것은 연간계획이 1,000두로 결정되어 있었습시다. 그래서 배정되는 약품 1,000두분을 가지고 허실없이 최대한으로 예방주사를 마친겁니다.

○ [redacted] 93년도에는 몇두나 했습니까?

○ [redacted] 93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소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 같은경우에 995두를 실시 완료 했습시다.

○ [redacted] 향간의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암지역도 그렇고 다른지역도 봐서 이런 예방주사 얘기도 못들었다고 합니다. 농촌에 소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하자면 고루고루 해야 할텐데, 전혀 몇년을 가도 소 예방접종 한번 못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잘모르겠습시다.

○ [redacted] 예방주사 만큼은 공수의가 소신을 가지고 신용껏 일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 1,000두 계획이라면 13,000두 소사육 두수중에서 1,000두가 실시계획이기 때문에 극히 부분적인 사업으로 면별로 따져 봐야 면당

100여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기간내에 소규모 양축농가를 우선하기 때문에 몇집정도 혜택밖에 사실은 안돌아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집들은 말씀하신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를 우리집에는 오지 않았다, 물론 못갈 경우도 있을 겁니다.

○ [redacted] 공수의하고 직원이 같이 나갑니까?

○ [redacted] 읍면 축산담당이 방역사업에는 항상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본위원이 보았는데 축산담당직원이 농가별로 연락을 철저히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몇사람한테 얘기해 소를 모아달라고 해서 가보면 소 10두도 만나왔습시다. 그러면 그 목표는 예를 들어 100두다 하면 100두 접종의 것으로 해버리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철저히 접종이 되도록 지도도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서 잘 예방 접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시다.

○ [redacted] 예. 잘하겠습시다.

○ [redacted] 광문촌 위원입니다. 불실초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

다. 몇일전 신문보도에 보면 평창군의 초지 총면적이 거의다가 불실초지라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습니다.

국고만 낭비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불실초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redacted] 매년 기성초지에 대해서 가을철에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조사결과, 초지법에서 규정한 등급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상.중.하 3등급으로 조사가 됩니다.

하급으로 조사가 되가지고 집계된 4 필지에 대해서는 하급으로 관리되는 기간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초지법 절차에 의해서 1년간의 범위내에서 가축입식이나 또는...

○ [redacted] 시간 많이 끌지 말고 과장님이 앞으로 불실초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redacted] 좋습니다. 불실초지를 매년 초지보완사업계획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보완해 나가고 도저회 초지로서 관리유지할 기능이 상실된 초지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환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용도 제고차원에서 농지로 전용허가해주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 [redacted]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앞으로 철저히 해서 국고낭비 보다도 융자금이나 모든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과장님 광문춘위원의 초지관리 사후관리 사후조처에 대한 질의내용중 불실초지로 확정이 되면 초지이용가치 판단에 의해서 희망하는 대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는 산림훼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행법으로는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나무를 비어서 처분하는 산림훼손 방법중에는 제일 용이한 방법이거든요.

또 초지조성 한다라고 하면 보조니 융자니 돈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놓고 그다음 불실관리 하거든요. 그럴 공짜로 주는 돈을 가지고 초지만들어 놓았다가 산림훼손해서 소득불것 보고, 했다가

한2년 법정시한이 지나간 다음 불실초지가 되었으니까 개간을 하는 겁니다.

초지를 농경지화 하는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요. 그러면 산림만 황폐화 되는 겁니다. 상당한 국고를 축산진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것을 역이용 해서 산림황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산높은 곳에서 개간을 해가지고 토사유출되면 평지에 멀쩡한 농경지가 매몰이 되고 이런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바로 본군의 축산진흥사업이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때 부터 그런식으로 전부다 되어 왔기 때문에 엄청난 불실초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평지역에 청소년 수련장인가는 본군에서 시범초지조성을 한것입니다. 송아지 한마리 풀밭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거기서 장난질 한사람은 소득들 보고 이제 수련장으로 할려니까 땅값이 비싸서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자꾸만 정부자금가지고 지원해주고 해주어서 그런 역이용을 해서 산림황폐화를 시키는 근본원인이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축산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 [redacted]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redacted] 이치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군정질문시 축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추가로 질의를 올리는데, 우리 평창군은 강원도에서 유일한 축산군이요 또 전담하는 축산과가 있어서 축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강원도에 축산농가가 47,000호에 평균 축산농가에 호당 소가 3.6두 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본군에는 평균 2.5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는 대관령에 목장도 많이 있고 소도 많이 키우는데, 어떠한 특수한 계획을 세워서 지도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고 해서 강원도 타시군, 다시말해서 축산과가 없는 시군보다 평균치가 높아야 할텐데 낮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송아지가 낳는 숫자보다 도살하는 숫자가 많다는 얘깁니까?

○ [redacted] 아직까지 호당 사육규모가 부업형태의 열세농가가 많다고 얘기 하겠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말이 안되지

요. 왜냐하면 축산과가 생긴지가 몇년  
입니까?

○ [redacted] 14년째 입니다.

○ [redacted] 14년이라는 강산이  
한번 반 변했는데 다른군보다도 적습니  
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지도를  
또는 사육지도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 [redacted] 우선 위원님 말  
씀하신 호당평균사육두수에 관한 사항부  
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때 호당평균 사육두수를 의원님  
께서 조사하신 바로는 3.6두인데 평창군  
은 어떻느냐 했을때 2.7두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2.7두는 기관보유분을  
제외한 순수농가에서 기르는 한우가 호  
당평균 2.7두입니다.

○ [redacted] 기관보유분의 기관은  
무엇입니까?

○ [redacted] 한우를 농촌진흥  
청고냉지 시험장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  
에 그분을 제외하고,

○ [redacted] 어디에서 키웁니까?

○ [redacted] 대관령 횡제의  
고냉지 시험장입니다.

기관분을 제외하고, 순수농가가 기르고

있는 수치가 평균호당 2.7두입니다.

○ [redacted] 통계가 있습니까?

○ [redacted] 통계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끝에실음)

○ [redacted] 과장님께서 하기 좋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본군에는 강원도 평균치보다 낮은것이  
불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redacted] 기업목장이나, 기  
관분을 합한 통계로 따지면 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 [redacted] 어느 통계에 있습니까

○ [redacted] 가축통계조사표에  
나와 있습니다.

○ [redacted] 지금 끝난후에 가축  
통계조사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대비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에 알겠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가축통계표및 강원도대비표 끝에 실음)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  
까?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한우농가가 있는데 주로

장평 우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마다 출장 두수가 대략 얼마정도가 됩니까?

○ [redacted] 금년도 10월말까지 통계입니다.

장평우시장은 3,130두가 출장을 했고, 진부 간이우시장은 130두가 출장을 했습니다.

○ [redacted] 진부는 지금까지 장이 서고 있습니까?

○ [redacted] 아직 폐쇄조치는 안된 상태로서 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합계는 3,233두가 가축시장을 이용했습니다.

○ [redacted] 매장 몇두정도가 됩니까?

○ [redacted] 50두정도입니다.

○ [redacted]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겁니까?

○ [redacted] 에 작년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redacted] 의지 상인도 많이 들어 옵니까?

○ [redacted] 대부분이 의지상

인들이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 [redacted] 우시장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미안되어 있어서, 지난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평면장 포괄사업비를 들어서 포장을 반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군에서 포장계획을 세워 포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 [redacted]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축산분야에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작년도에 절반정도 포장이 들어갔고, 금년도 잔여분에 대해서 용평면장이 포괄사업에서 진행하려고 면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redacted] 면에서 마주 하라고요. 그것외에도 할일이 많은데..., 군에서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곳은 주민도 몇동 안살고 있습니다.

우시장 때문에 생겼는데, 군에서 사업투자를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벌써 여기 계시면 그길은 포장미 오래전에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려운 면에다가 면장포괄사업비 얼마되

지도 않은데, 그것 가지고 자꾸 하라고 떠넘기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올해 책임지시고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포장을 하세요.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약속 하시는 겁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그다음에는 부허가 축사 추인관계인데, 전체대상 농가에 비해서 66%밖에 처리가 안되었는데 그 문제점 및 대책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은 기회에 축산농가들을 양성화 시키지 못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 것 외에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했거나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간이 지났습니까?
- [redacted] 11월 말까지를 추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럼 끝났네요.
- [redacted]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신고 받을 때는 건축물로서의 형태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계수가 나왔는데 1년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추인 가능한 동수

를 조사했더니 192동입니다.

이렇게 볼 때 추인가능한 건축물대 추인은 끝났다고 봅니다.

- [redacted] 만약 안된 곳이 있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 [redacted] 이 기회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단위에서 총괄적으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머지 잔여동수는 축사로서의 가치를 인정 안하는 소유자 자체의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그다음 평창관내 가축두수가 많이 있는데, 전염병 발생건수가 있었습니까?
- [redacted] 일반적인 전염병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젓소에 블루세라에 감염된 소가 6마리가 나와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도살후 소각 매몰 했습니다.
- [redacted] 아까바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redacted] 아까바네가 주기적으로 온다고들 얘기하는데, 지난해에는 없었고 더욱이 우리가 지난해 부터 백신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가 자체 평가합니다.

○ [redacted] 아까바네 예방이 가능합니까?

○ [redacted] 예방이 가능하합니다. 예방주사 백신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올해도 많이 시행 하 셴습니까?

○ [redacted] 올해도 했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김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업축산농가 지원현황 가운데, 협업체로 축협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우전문농가하고, 한우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협이 대상이 들어 갔습니까?

○ [redacted] 한우종합대책사업에서 축협을 비롯한 생산자조직도 이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영농조합 법인을 비롯한 협업체 사업 생산자 조직단체도 들어갈수 있고 그다음 농가개별목장사업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가지의 분류로 사업지원체제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개인 목장은 이사람들의외에 대상이 없었나요?

○ [redacted]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93년도에 처음 시도되고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4월달 5월달에 사업설명회를 위해서 정기계획에 의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2차래에 걸쳐서 농가를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도 설립이 되었고 농가들이 사업의사를 표시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낸 사항인데,

○ [redacted] 영농조합 법인이 한군데도 설립이 안되었습니까?

○ [redacted] 금년도에 한우영농조합법인 3개를 설립했습니다.

○ [redacted] 3개를 설립했는데 다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 [redacted] 3개 설립한 가운데서 2개법인이 이사업 신청을 냈었지요 그랬는데 법인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가 아직까지 사업자 확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축협을 비롯한 생산자 조직사업하고 농가개별사업만 사업승인을 냈고 법인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전망으로는 이사업도 사업자승인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개인목장 신청자가

대상자외에 또 있었지요?

○ [redacted] 없었습니다.  
신청된 농가는 전원 사업승인을 받았습  
니다.

○ [redacted] 여기에 관련된 지침  
이 있지요? 그 지침을 감사 끝나고 바  
로 갔다 주세요. ( 지침: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 [redacted] 알았습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7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사  
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사업자가 도암면 횡계2리의  
협동목장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목장입니까?

○ [redacted] 젓소를 50두정도  
기르고 있는 목장입니다.

○ [redacted] 상당히 축산업으로서  
는 과도에 올라있는 목장이지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전체 유기질화 사업  
에 한 3,000만원정도의 부자가 되었는데  
젓소를 50두정도 사육을하고 소득을 보  
는 목장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충분히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2,180  
만원의 지원을 안해줘도 할 의욕만 가졌  
다면 할수 있는 목장입니다. 이런 규  
모의 목장이라면, 우리관내에 영세한  
목장들, 소규모의 목장을 하고 있는 순  
수한 농민에게 도비.군비를 투자를 해도  
너무 많아서 투자를 못하는데 기존의 이  
사람들은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농민이  
라 하겠지만, 전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운  
택한 사람들이 하는데 도비 3분의1, 군  
비3분의1, 자부담 3분의 1만 투자를 해  
서 좋은시설을 갖추도록 특혜를 준것이  
아닙니까? 영세 축산농가가 우리군내  
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redacted] 이사업은 금년도  
에 처음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영세농가가 과연 분뇨처리시설사업을 해  
서 자체부담을 1,000만원이상 부담해서  
시설을 설치완료할수 있는 농가는 관내  
에 극히 드문 사항이고, 더욱이 금년도  
처음사업을 도암면 횡계2리 지구에다 설  
정한것은....

○ [redacted] 충분히 있습니다.  
영세농가에..., 우리 영농후계자로 선

정된 축산업을 하는 후계자들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축산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 이 좋은 특혜를, 이견 상당히 경제적으로 운택한 사람을 골라서 하니까 이렇지, 3분의2를 순수한 보조를 주는데, 3분의 1만 투자를 해서 하려면 돈이 없으면 농협이나 축협에서 얼마든지 용자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농후계자들, 지역농민들 있는데 표본이 되는 그사람들 키워주는 뜻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목장하는 사람들 특정인을 골라서 도비나 군비 보조사업 내려오면 우선 머리속에 특정인들 생각해 두었다가 이런사업 왔으니까 한번 해 불러는가, 다른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해버리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 [redacted]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희망자를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었고, 경합된 사항도 아니지만, 특히 송천유역 수질보전 차원에서 군수가 이지역내에 있는.....

○ [redacted] 이것 하나가지고 송

천유역이 수질보전이 됩니까?

엄청난 삼양목장 같은것은 버려두고....,

○ [redacted] 이런 경우에는 말이지요 가급적 영세농가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지역, 그런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모아서 비료화 할수 있는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게나 싶어요.

○ [redacted] 그런쪽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redacted] 앞으로 절대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런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게끔 지원되는것이 아니잖아요 가급적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합니다.

○ [redacted] 알았습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께 제가 심하게 말씀 올린 사항인데, 본위원이 91년도 의회가 개원되면서, 오수로 인한 오염, 다시말해서 송어장 오염때문에 평창군에 30개 송어장 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탄면에 300여가구에 1,000명이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를 누누히 말씀 드렸고, 임시회의나 정기회의가 있을때 마다 축산과장님께 격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금년도 본군에서 미탄면 차용담씨께 치어사육을 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일시농지전용 허가를 함으로써 대체농지조성비 210만원인가를 징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치어장 사육 허가는 산업과, 축산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4개과가 주무과로서 신고나 허가를 필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가장 의문이가는 사항은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다 의견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축산과장님께서서는"불가" 라고 해야 할텐데 유수인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 의견을 제시할때 "가"라고 제시를 해서 그 허가가 이루어 진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을 긴 설명은 하지 마시고 왜 가능하다고 했는지, 미탄면장이 치어장을 허가해 주는데, 농경지나 또 하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했는지, 또는 축산과에서 현지를 조사해서 이것은 치어장으로 허가할 차용담씨 최해진씨를 해줘도 된다 라고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오.

○ [redacted] 건설과에 제출된 민원사무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편의를 위한 1회민원처리제도를 시

행하는 과정에서 축산과의 의견은 과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닌 실무담당자가 의견 기술란에다 기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사항이 후에 다시 발견되어서...

○ [redacted]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 [redacted] 그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그것을 체크를 해서 건설과로 이송했다는 말씀인가요?

○ [redacted] 이송이 아니라 부서별 의견을 쓰는 서식에다 실무자가 직접 바로 작성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충분히 검토치 못한 사항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 [redacted] 이후는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묻는것만 답변 하세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실때 과장님께서 잘 못보셨다는 말씀인가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래서 그것이 건설과로 협조공문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말씀이지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랬는데 그 이후에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차용담씨께 포기를 할수 없겠느냐 하고 넘어갔을때 축산과에서 누가 가셨나요?

○ [redacted] 저하고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 [redacted] 가능하다고 해서 건설과로 서류를 협조를 해놓고 그곳을 빗하러 갔습니까? 지금 미탄면은 목욕도 못하고 세탁도 못하고 도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처에서 오염은 안된다 하더라도 몇백톤 나갈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성 없게 거기다가 서명날인하고 또 부군수님 지시라고 차용담씨 붙들고 포기할수 없느냐고...,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 [redacted]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포기를 시킬려고 간 목적입니다.

○ [redacted]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 평창군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이야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는뜻 아닙니까?

○ [redacted]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 [redacted]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누구보다도 축산과장님은 불가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 [redacted] 당연히 제 의견은 불가 이지요.

○ [redacted] 그런데 어떻게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이 그것을 해가지고 서명날인해서 과장님 승인도 받지 않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확인을 해서 그 중요한 사항을 건설과로 이첩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사항은 거짓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동료위원도 다 생각을 해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공문을 계원이 서명을 해서 건설과에다 드리는가 말입니다. 지금 미탄에서는 불편을 느껴서 생활도 못하고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나는 잘 읽어보지도 못하고 확실히 확인을 못한 잘못이지 계원이 했다는 얘이지요?

○ [redacted] 계원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redacted] 책임을 전가하는것이 아니고 잘 못보았다. 그래서 그냥 넘겼다는 얘이지요.

○ [redacted] 문서처리하는 과정은 제가 잘몰랐습니다.

○ [redacted] 위원 그렇다면 미란은 뭇하러 갔습니까?

○ [redacted] 전체 합동으로 다녀 왔었는데, 비록 민원사무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다수 주민의 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게 ... ,

○ [redacted] 책임을질 과장님이 책임을질 일을 못했지요?

이 송어장 얘기가 한두번 입니까?

91년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홀하게 취급 하십니까?

○ [redacted] 그건에 대한 종합의견으로서 축산과 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으로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redacted]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격한 말씀을 올리는것은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건설과나 산업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가"라고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불가"라고 해야 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처리를 해서 허가가 나게 하는가 말입니다.

○ [redacted]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허가가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만나면 뭇합니까?

일시능지전용허가에 의해서 대체능지조성비를 본군에서 수납 했는데 어떻게 안내줍니까?

앞으로는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를 충실히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보충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증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 都市~~ 건설.도시과장 홍기표 입니다.

건설과,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건설과, 도시과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준환 지역계획계장 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인사)

정근성 방재계장 입니다.

(방재계장 인사)

이운배 기반조성계장 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인사)

석명준 토목계장 입니다.

(토목계장 인사)

송재춘 도시계장 입니다.

(도시계장 인사)

이용원 토지관리계장 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인사)

박종길 주택계장 입니다.

(주택계장 인사)

박현창 수도계장 입니다.

(수도계장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건설과 기구는 4개계에 지역계획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13명에 정원이 13명 모두 충당이 되었습니다.

지역계획계는 하천부지및 공유수면의점용허가와 하천감시및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도로부지전용허가, 토지이용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재계는 방재종합계획수립과 수해복구계획수립및 추진, 재해대책본부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계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계는 군도및 농어촌도로정비와 도로교량의 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는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및 시행과 도시계획및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계는 토지거래규제에 대한 업무와 개별지가의 특성조사및 지가산정,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주택계는 건축허가및 무허가 건물단속과 주택개량및 농어촌지붕개량, 취락구조개

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는 상하수도 사업계획수립시행, 수도료징수및 무허가수도단속, 수원지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4개계에 도시계, 토지관리계 주택계, 수도계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12명에 현원 11명입니다.

결원이 1명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현황이나 부동산증개업자 현황, 건축허가현황, 주택관련업체현황, 건축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redacted]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건설과, 도시과 2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한건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2년도 군정보고시 김기열 군수님께서

미탄면 마하지구는 수물예정지구이기 때문에 투자를 중지한다고 하였고, 금년 여름 임시회의때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했을때 과장님께서 안계서서 기억으로는 방재계장께서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미탄면 한탄, 기화, 수청, 마하 4개부락에 투자를 중지하고 각종 사업을 중지한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군의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그 지역이 군도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군도로 85년도에 지정을 해서 계획서에 보면 95년도에 군도 확포장을 하는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결과가 오는가 하면 약 10년간을 시멘트 1삽도 못바르는 결과가 옵니다. 왜그런가 하면 군도는 한정된 양여금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되어있지 농로확포장 예산 가지고는 못한다니까 이런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본군에서 계획을 세울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과연 군도 확포장 사업을 매년 얼마를 투자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은 언제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년도에 하는지 그것을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당초의 군

도 정비계획 수립시에 모든 차량이용이  
나 인력통행, 농산물 반출등을 감안하여  
비시를 낸 결과 미탄면 한탄리는 비시가  
떨어졌습니다.

95년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92년도 1.2km는 군도확포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중장기계획상의 95년도 이후부터  
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 [redacted] 계획이 언제 들어 있  
습니까?

○ [redacted] 군도는 원칙  
적으로 94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정비계획에 의하여  
재수립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군정질문사항의 답변에도 나와있  
습니다.

현재 도로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95년이후에는 계획이 수립될것입  
니다.

○ [redacted] 확실히 어느 년도라고  
는 만나와 있습니까?

○ [redacted] 아직까지  
는 수립중에 있습니다.

○ [redacted] 강경석 실장께서 5개  
년 계획할때 나와 있었습니다.

○ [redacted] 그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디만, 현재 군도확  
포장 공사율이 전국적으로 너무떨어져  
내무부에서 도로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4년도에 마무리하여 군도를  
전국 80%수준에서 도로포장율을 끌어  
올릴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안되어 재수  
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립을 하게되면, 한탄,마하리 도로도  
재수립이 될것입니다.

○ [redacted] 궁금한것이 85년도에  
군도로 지정하여 시멘트 한삼 못바르고  
있는데, 그때가서 재수립하여 또 10년  
해놓으면, 20년이 될거 아닙니까?

○ [redacted] 이제는 그렇  
게 안될것입니다.

저희들 군도는 현재 포장율이 62%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앞당겨 지게 됩니다.

○ [redacted] 기존 시작하는데에다  
마무리해야 할것아닙니까?

○ [redacted] 마무리는 100%다  
못합니다.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80%수준으로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안될것입니다.

○ [redacted] 이해가 안갑니다.

○ [redacted] 도로정비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수립이 됩니다. 그때가서 시원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93년도 확포장계획을 보면, 방림군도 2.9km에 8억7,800만원 진부면 5.7km 13억 9,700만원, 차이가 3억정도 납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redacted] 방림면은 계수가는 도로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확포장을 해야할 도로입니다. 진부면은 두일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부분은 확장이 되어있어 포장만했기 때문에 단비가 작게 들었습니다.

○ [redacted] 3억씩 차이가 납니까?

○ [redacted] 확포장하는 것 하고, 확장되어 있는것 하고는 차이 납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단비가 틀려집니다. 방림 계촌간은 많이 확장을 해야하고 압도 있고, 지역여건이 틀려 단비가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돈을 들여 물량을 못하였다면 문제이지만, 다 하였기 때문에

단비에 따라 틀리는것이지 돈을 더주고 덜주고하여 틀리는것은 아닙니다.

○ [redacted] 유인볼을보면 단가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겁니까.

○ [redacted] 지역여건에 따라서 단비가 틀립니다.

○ [redacted] 잘 알았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평창 배수펌프장은 완전히 준공되어 사용가동을 해보았습니까?

○ [redacted] 예, 금년도 우기때에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지금 잘되는데, 현재는 펌프가 1대만 가동이 됩니다. 1대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94년도에 펌프1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2대만 되면 시가지에 물이 찬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 [redacted]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기사 채용관계나 여러가지 문제가...,

○ [redacted] 장비는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운전기사도 확보를 해놓고 있고 종합장비는 운전기사를 숙직까지도 배제하고

운전만 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 [redacted] 그다음은 무허가 건물 현황에 대해서 사실 농촌에 가보면 대장이 누락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고를 해서 할려고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 [redacted] 도암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3동인가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외에 농촌사람들은 지금현재 누락된 주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하니 잘 받아주지도 않는답니다.

○ [redacted]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되고 그사람들이 양성화 시킬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서류를 제대로 못합니다. 말하자면 국공유지나 이런곳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첨부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해줄수 있는것은 전부다 해드렸습니다. 먼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23동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 [redacted] 그외의 농촌에 있는

주택들이 빠져서 면사무소에 와서 얘기를 해보면 전혀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 모르는지 그것이 안된답니다.

이것을 다시 각 면사무소에다 지시를 해서 이것은 내땅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뭔가하면 측량을 하고 건평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것이 뒷받침 안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장같은 사람을 교육을 잘 시켜서 신청을 하자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라해서 지시를 해서 앞으로 빨리 이루어 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이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계장으로 하여금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 하겠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종영 위원께서 제설장비 구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가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하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특수면허 가진사람이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앞으로 장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군에다 두었다가 눈이 많이 내리는 폭설기에 활용하실것 아닙니까?

○ [redacted] 아직까지 장비이용에 대한것은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상은 종합장비는 군에 비치하고, 백호로우더는 눈이 많이 올때는 많이 오는지역에다, 특히 도암 횡계가 많이 오니까 횡계에다 겨울내는 배치를 하고 그곳에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종합장비는 우선 도로를 통과할수 있도록 미는 역할과 뒤에서 모래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다 배치를 했다가 계속 군도를 전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장비가 2대 인가요?

○ [redacted] 네.

○ [redacted]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다 1대는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금당계곡군립공원지정고시에 관련된 문제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지구계획 구상하는 내용을 보면,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보존지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집단시설지구를 조금더 확대하는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민자를 유치할수 있는 방법이 취락지구 보다는 집단시설지구를 확대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redacted]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모든 공청회에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나 각 면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반아서 용역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나온정도가 되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지난번에 과장님께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용평면 재산2리지구, 백암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집단생활시설 지구가 더 합당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실사 하는 부탁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그다음 폐천부지 매

각 현황입니다.

당초예산에 약 7억3,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건도 매각실적이 없지요?

○ [redacted] 올해는 없습니다.

○ [redacted] 그래서 여기보니까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한건도 매각을 못했다 하는것은 업무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것이 좋겠고, 또 예산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것이 반복되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배수 펌프장에 관리사가 배치가 됩니까?

○ [redacted] 관리하는 사람은 인력은 지금 배치가 안되고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나 장비같은것을 전부 읍사무소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재해대책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것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호우시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호우시라 해도 매년 시가지가 침수되는 일은 없고, 몇년가다가 한번씩 침수가 되면 이용하기 때문에 인력확보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 [redacted] 사용빈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관리사를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8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 유사시 사용을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나 가서 작동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 [redacted]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작동하는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 [redacted] 작동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다 제어가 있기 때문에 제어기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redacted] 아무나 교육만 받으면 할수 있습니까?

○ [redacted] 그래서 읍사무소에 전부 이관하고 교육을 다 시켰

습니다.

○ [redacted] 아무래도 수해가 날 수 있는 시기에 관리할 사람들이 다시한 번 점검배치가 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redacted] 네. 알겠습니다.

○ [redacted] 그다음에는 영동고속도로가 70년대 건설될 당시에 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정부의 어떤 정책의 수단으로 뜻하지 않은 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등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수십가구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문제 때문에 주택계장님 하고도 애기한적이 있는데, 이문제 가운데서 앞장서서 해결이 될수 있도록 조치할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redacted]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종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이전 주택에 관한것은 교육자료를 전부다 만들어서 읍면을 순시하면서 교육시키도록 주택계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redacted]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무허가로 건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무허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redacted]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바쁘니까 행정절차를 안봤다 보니까 무허가로 취급이 된것 같은데 그 내용도 현황을 전부다 알겸 해서 읍면을 순시하면서 처리하는 방안 같은것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redacted] 이 문제가 빨리 개선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평 취락지구 용역을 지금 하고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설계변경도 하고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실무계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문제가 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무자하고 계장님하고 바란스가 잘 안 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계장님들이나 실무자에게 점검을 합니다만, 도에다 올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에서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사업에 일관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챙기시고 좀 득려를 해서

이 문제가 속히 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redacted] 이 문제는 국도우회도로 문제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늦게와서, 제가 11월 말경인가 도에 올렸습니다.

○ [redacted] 11월 말경에 올렸어요?

○ [redacted] 에

○ [redacted] 에 알겠습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금당계곡이 군립공원으로 94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됩니까?

○ [redacted]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후에,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군립공원 지정고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지금 안미쪽과 봉평쪽 사이에 확포장이 안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 [redacted] 8.3 km가 미포장 되어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지정이 되기전에 확포장이 됩니까?

○ [redacted] 내년도까지

는 확포장이 안 됩니다.

백옥포간 군도확포장에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만, 100%는 포장이 안될것 같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95년도 가야 포장이 됩니까?

○ [redacted] 그정도 가야 확포장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 [redacted] 다음에 93년도에 건설과의 사업부대비 집행현황에서 잔액이 남은것이 3억9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redacted] 이것은 94년도 사업에 설계용역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조기에 착공이 될수 있도록 올해 측량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redacted] 에 알았습니다.

○ [redacted] 팍분춘 위원입니다. 진부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부는 1일1,000t 량의 규모로서 지금 현재도 고지대이면, 말리는 커녕 식수가 부족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송정택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약 3백세대가 입주가 된다면, 이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앞서 군정질문 사항에 의한 답변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진부,도암 상수도를 광역화 상수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천년대를 향한 상수도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반영이 95년도에 진부지역에 8,500t, 도암지역에 9,000t 규모로 지금 계획이 서있습니다.

○ [redacted] 95년도요?

○ [redacted] 에 95년도에 계획이 서있습니다.

○ [redacted] 95년도로 계획이 서있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할때, 송정택지에 집을 짓고 나서 안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redacted] 안된다고 저희들은 분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 [redacted] 꼭 되리라고 믿습니까

○ [redacted] 에, 낙관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도나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기존 되어있는 상수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여간 진부지역이나 도암지역에 취수하는데, 그러니까, 음토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놓겠습니다.

○ [redacted] 과장님 꼭 책임 지십시오.

○ [redacted] 에

○ [redacted]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송정택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송정택지가 미분양 관계로 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 본인도 조성만 하면 다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시다만, 금융실명제 실시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으로 분양이 잘 되지않고 있는데, 94년도에 분양계획을 더 많이 홍보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의 분양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redacted] 앞으로의 분양계획은 우선 상품화 만들자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완료시키는 반면에, 전공무원을 판매요원화해서 택지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다시 공사비조로 나가야 할 돈을 현금을 안 주고 땅으로 대물하는 방법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자체를 개발을 했습니다만, 분양추진을 위해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다 택지분양 알선을 의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나하면, 의뢰를 그냥하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그러니까 강원도택지개발조례에 의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알선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얼마씩해서, 이 업무에 대한것은 다시 개발을해서 추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4년도에는 웬만큼 분양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redacted] 과장님 희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접수가 785건이 되고, 그중에 상향조정된 것은 125건, 하향조정 된것은 595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수가 하향조정을 이의신청을 했고 처리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가조사를 올해 3년차 하고있죠?

○ [redacted] 에  
○ [redacted]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가조사에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가현실화 작업으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세제에 부담이 되기때문에 그런 어떤 이의가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만, 지난해 하고 올해를 보면 경기침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가가 하향,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가가 오르지않고 지가가 내리고 있고, 농촌의 농지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민들이 팔려는 사람이 있지만 살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런 현상 가운데서 해마다 지가가 오르고 있다는것은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것은 지가가 공정하게 조사가 되고있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를 조사할때는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해서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가조사를, 어제도 일부 애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공직자들이 조사를하고 또 현지확인을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기준지가에 의해서 매겨놓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여러가지 업무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과정일수도 있겠지만 지가조사를 한번 해놓으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갈수 있다는것을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 [redacted] 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군 지가동향 자료를 입수해서 판단해 본 결과에 용도별로 보면, 평균 3.14%가 내렸고, 그중에서 비도시 지역이 제일 많이 내렸습니다 -4.31%이고,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6.45% 전이 3.06%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향을 보고 저희들이 94년도

에 공시지가 기준은 이런 지가동향을 보고 참작을해서 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토지관리제장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강조해서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dacted] 평균 다 내렸다는 말씀이죠?

○ [redacted] 에

○ [redacted]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현황, 그리고 그 처리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27동이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특이 한것은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있어요.

도암면 22동이고, 진부면2동,용평면1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독 군청에서 거리가 먼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기는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redacted] 여기에 대한것은 제가 아직도 판단을 안 했습니다. 판단을 안 했는데, 그런 이유도 있을것입니다.

행정 단속기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 그런 이유도 있겠고, 특히 도암지역같은 데는 주로 전부다 국공유지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여기에 적발된것은, 그리고 저희가 80년도나 70년도, 80년도초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추인을 할수 있도록 한번은 전부다 풀었습니다.

다하고 못 한것이 이겁니다.

아주 고질적인 것이었는데, 이번에 25동에 대한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 [redacted] 어쨌든간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무허가로 건축을 해서 추인을 받은 사례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믿고 무허가로 짓는 집들이 늘어날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감독.관리 소홀한 점을 이용해서 짓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면 무허가건축물을 지은 사람도 피곤하고, 또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시과장까지 겸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송정택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 송정택지사업에 군비가 32억7천만원이 투자된것이 맞습니까?

○ [redacted] 예

○ [redacted] 용자가 23억, 그래서 합이 55억7백만원, 돈을 투자해서 처음 수입 예상액은 77억정도 세우면 좋겠다 해서 송정택지사업을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름에 말입니다. 도시과 자료에 보니까 택지분양율이 3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회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한 세수에 결함이 생길까 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분양이 저조한 원인이, 광문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산 경기침체다, 금융실명제, 강릉시의택지 조성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택지가 안팔리고 있다 당초 이사업을 추진할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때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질의도 하고 자료요구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추진하면 분양하는것은 문제없다고 회의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실지 요구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모든 뒷받침은 사실상 승인을 해 드렸는데, 여기 지금와서 보면 분양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아울러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며, 또 두번째 질의는 평창군청앞에 택지조성을 내년부터 추진할 목적으로 용역비를 지난 추경때 의결한 기억이 납니다. 이 사업도 좀더 앞으로 깊이 연구 검토해서 다시말해서 송정택지 지구에 이러한 사업처럼 안되는 사업은 앞으로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송정택지 미분양에 대한 책임질사람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말해서 중

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분양이 안되니까 끝나는것이 아닙니까? 처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관계공무원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래서 평창군의 세수에 엄청난 결함이 생기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사업을 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추진할때 아주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생각 하면서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송정택지 미분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것은 군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세수결함이 생기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송정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군 수입에 세수결함이 생겼다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 22억을 저희들이 보았지만, 개발이익 22억원까지 순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에 잡았기 때문에 이런 세수문제가 생겼지, 사업에 의해서 세입차질이 생긴것은 아닙니다. 군전체로 보았을때는 세수차질이 생긴것은 사실이지만, 송정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전체를 택지분양을 100% 다하면 100%

성공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업비를 충당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 분양은 안되었다 하지만, 군 명의로 땅은 남아 있다는 애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4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애깁니다. 어느정도 시기가 가면 물가나 모든 지가나 이런 경기 침체라던가 모든것이 해결됨에 따라서 이 부동산은 언젠가는 선호할수 있도록 되어 있을 기간이 다가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부지역은...,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분양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저희들이 분양할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분양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는한 책임을 지고 100% 분양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보충질의 없으시면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평창군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 2일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 出席委員

委員長	李 相 薰
幹 事	朴 容 泰
委 員	李 致 玉
委 員	朱 泰 元
委 員	金 樂 雲
委 員	郭 文 春
委 員	金 鍾 永

○ 委員아닌 議員

議 長	韓 榮 一
-----	-------

○ 出席公務員

環境保護課長 金 學 根  
産 業 課 長 金 時 漢  
地域經濟課長 朴 榮 源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建設・都市課長 洪 基 杓

○ 議會事務課

專門委員 辛 教 善  
議事係長 咸 京 鎬

[ 議 席 ]

○ 議席表 ( 328 面에 실음 )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59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 捺印함.

1993年 12 月 3 日

委員長

李 相 

專門委員

辛 教 

# 質 疑 . 書 面 答 辯 書

質 疑	박 용 태 위 원	답변자	평창군수 (지역경제과장)
會 議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 1993. 12. 2 )		
<p>&lt; 質 疑 要 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가스 제조업체 2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li> <li>◦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li> </ul>			

## < 답    변 >

### 1. 고압가스제조업체 제조과정에 대하여

- 고압가스 제조업 현황

상 호 명	소 제 지	대표자	가스명	저장량	비고
계	2 개 소				
쌍용양회공업(주) 용평사업본부	도암면 용산리 130	우덕창	후래온 22	44.4 RT	
오리온프리토레아 (주)	진부면 상진부리 35	노필규	후래온 22	76 162. RT	

- 제조하는 과정

- 고압가스 액화냉매를 증발기에서 증발시켜 소정의 온도를 얻고 기화된 가스는 압축기로 압축하여
- 압축된 가스를 다시 응축기로 보내어 액화냉매를 만들고
- 이를 다시 증발기로 보내어 사이클링 증기압축식의 방법으로 냉동제조 한다.

- 주사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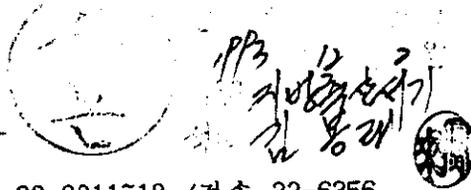
- 쌍용양회공업(주) 용평사업 본부 : 호텔 냉방유지 사용
- 오리온프리토레아(주) : 감자저장실 온도조절

2. 고압가스 판매업소 위치에 대하여

◦ 고압가스 판매사업 현황

상호명	소 재 지	대표자	가 스 명	용 도
계	4 개소			
형제가스	대화면 대화리 1001	김승우	산소, 아세틸렌, 탄산	용 접 용
진부가스	진부면 하진부리	김진영	"	"
용평가스	도암면 차항리 54-3	최경자	"	"
평창가스	평창읍 하리 58-23	안승진	산소	"





우 232-8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33-6356

문서번호 축산 51500 - 577  
 시행일자 1993. 7. 15 (3년)  
 성유  
 발음 강원도지사  
 참조 축산과장

취급	체 송	군 수
보 존	5 년	
부군수		
과 장		부농관리계장 가축방계장
기안	김봉래	축산계장 
		합조

제목 '93. 상반기 가축방계조사 결과 보고

1. 축산 51513 - 0544 ('93. 6. 19) 호와 관련입니다.
2. '93 상반기 가축방계조사 건과를 붙임과 같이 집계 보고합니다.

붙임 : 가축방계조사 결과 집계표(한우의 19종) 1부. 끝



'93 상 반 기 가축통계조사 총괄표

구분	한 우		육 우		유 우		돼 지		담		산 양		변 양		사슴		토끼		계		여우		밍크		오리		철면조		거위		재래봉		계량봉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계	3,235	9,436	2	498	82	3,580	17	2,160	806	23,842	343	4666	4	252	58	608	34	179	2,342	4,733	1	270			54	681	6	22	12	37	348	2607	53	2361
평창	671	2,554			31	583	5	370	99	4,177	90	1222	1	6	27	294	4	15	483	1,044					16	302	4	10	7	18	49	263	19	812
미탄	240	668							70	1,147	59	1255			4	17	5	53	148	343					2	19				39	196	15	425	
방림	240	509			15	334	3	70	88	1,780	26	46					11	24	258	361					10	98			3	8	26	147		
덕화	337	1,155			20	340	2	600	85	2,526	16	253					3	40	300	551	1	270			11	49					52	322	7	525
봉림	382	930			1	15	3	517	122	1,569	27	350			19	176			281	511										25	102	1	101	
용녕	245	672			3	123	1	83	75	1,715	17	721			2	27	5	17	238	662					4	71	2	12	2	11	47	211	6	341
전북	640	1,348					3	59	155	3,559	82	464			1	3	6	30	409	711					6	29				68	1020	5	157	
도암	280	1,600	2	498	12	2,155			72	7,329	26	345	3	253	5	91			225	550					5	113				42	346			

## 강원도 소사육현황

총 사육두수 : 42,651호 ————— 169,822두 (호당평균 3.9두)

◦ 한 우 : 41,275호 ————— 145,966두 (호당평균 3.5두)

◦ 육 우 : 63호 ————— 869두 (호당평균 13.7두)

◦ 젖 소 : 1,313호 ————— 22,987두 (호당평균 17.5두)

# 質 議 · 書 面 答 辯 書

質 疑	김 낙 운 위 원	答 辯	명 창 군 수 (축산과장)
會 議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93. 12. 2)		
<p>&lt; 質 疑 要 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종합대책사업 추진지침 제출(개인목장 신청자에 관련된 지침과 같은 내용임)</li> </ul>			

## < 답 변 >

- '93 한우종합대책사업 추진지침 따로 붙임

붙 임 : '93 한우종합대책사업 추진지침 1부.            끝.

1993. 12. 2  
지방축산청  
김용래

# 韓牛團地·牧場 및 營農組合法人등 協業體 育成 示範事業

## (1) 目的

-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한우사육농가 및 한우산업 기반 유지

## (2) 基本方針

- 한우사육에 적합한 입지와 유능한 경영주체의 확보
-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이용 극대화
- 한우생산의 적정유지 및 양축농가 소득 안정

## (3) 事業計劃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내 상
  - 한우사육농가
  - 한우영농조합법인 및 지역별 자생적인 한우사육 조직
  - 한우사육 단지를 조성하려는 개인, 단체, 조합등 법인
- 사업기간 : '93~'94(2년간)
- 사업비 (전국)
  - 총지원액 : 700억원
  - 촉진기금 보조 또는 융자
  - 지원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비율 및 지원조건은 「라. 세부실시요령(4) 지원기준」에 의함.

#### (4) 細部實施要領

추진 내용	주관(협조)
<p>(1) 사업개요</p> <p>〈한우단지 및 목장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사육에 적합한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확보한(소유 또는 장기임차)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도입, 한우를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최대한 확보</li> </ul> <p>〈한우농가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규모이하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양축을 위한 농반법상의 「영농조합법인」(30두이하 농가로 구성)을 구성토록 유도하거나</li> <li>○ 지역별 자생적인 한우사육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우사육 농민들의 협업체 추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li> </ul> <p>(2) 대상자 구비요건</p> <p>〈한우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조건이 좋은 단지를 우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장의 규모가 크고, 조사료 생산기반 정비 및 용수 개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우선 지정</li> <li>- 보다 장기간 소 사육을 할 수 있는 입지에 우선</li> </ul> </li> </ul> <p>※ 사육장 : 초지조성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방목이 가능한 산지 내지는 평지</p>	<p>시장·군수</p>

주           진           내           용	주 관(협 조)
<p>○ 개기 5년간 비육우 30두, 번식우 5두이상 평균적으로 사육을 한 실험자가 2인 이상인 것</p> <p>- 사육경험 확인 : 축산계장 또는 축협</p> <p>○ 단지가 실질적으로 공동투자에 의해 조성될 것</p> <p>- 1인의 지분이 단지참여자가 3인이하일 경우 단지 총 자산의 50%, 4인 이상일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이율 초과한 단지는 개인목장으로 간주)</p> <p>- 지분이 평등한 단지를 우선지정</p> <p>- 단지조성 투자분담 계획서 및 자본증명서 제출</p> <p>○ 번식우비율이 높은 단지에 우선</p> <p>○ 기왕에 소 부수밭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지 및 충분한 소 구입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단지에 우선</p> <p>- 사육부수 및 자금능력 확인 : 축협</p> <p>(한우복장)</p> <p>○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하는 자</p> <p>○ 초지·사료포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성우기준 두당 0.1ha이상 확보, 운동장은 번식우는 두당 3평이상, 비육우는 2평이상 확보</p> <p>○ 55세이하로서 5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자</p> <p>- 단, 56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같이 전업으로 종사할 경우 가능</p>	

추진내용	주관(협조)
<p>○ 다음의 목장에 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규모가 번식우는 10-30두, 비육우는 30-100두인 농가로서 목표년도의 사육규모가 번식우의 경우 30두이상, 비육우의 경우 100두이상인 자</li> <li>- 경영일지를 기장하고 있는 농가</li> <li>- 현장훈련실시, 시범농장으로 개방등 다른 한우사육 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li> <li>- 번식사업</li> <li>- 평야지등 일반지역보다는 산간지대등 한우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li> <li>- 위탁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장</li> </ul> <p>(한우농가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p> <p>○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동기를 한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자격을 가진 농민5명 이상이 작성한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자격은 ①당해 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②조합법인사무소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소 30두이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민으로 1가구 1인에 한함.</li> <li>• 정관의 작성은 농림수산부 고시 90-40호('90. 10. 17)의 「영농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라 적절히 작성</li> </ul> </li> </ul>	

주 제 내 용	주 관(항 조)
<p>하되 ①명칭 ②목적 ③사업 ④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재명에 관한사항 ⑦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재명시의 자본에 관한사항 ⑧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에 관한사항 ⑨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사항 ⑩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회계년도와 회계에 관한사항 ⑫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⑬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년총회 9.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창립총회의사록」을 설립등기서에 첨부</li> <li>•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농기계, 가축 및 기타 현물에 한하여 가능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p>- 설립등기를 마친 한우영농조합법인은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p> <p>-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세 감면등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감면, 상속세 면제등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p>	

- 기타 영농조합법인에 관한사항은 구조27105-1445 ('91. 9. 2)의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참고(각도의 농어촌개발과 또는 농산과 비치)
- 협업체는 동일 목적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등기를 하였거나 5인 이상의 농가가 회칙(운영규정)등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모임체
  - 마을 공동목장등 공동사육장의 경우 제외
  - 다음의 경우에 우선
    - 참여 농가중 번식사업영위 농가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참여농가 총사육두수중 번식우를 50% 이상 사육하고 있는 법인 또는 협업체
    - 상표의 유명도 또는 대형 소비처에의 납품실적이 많은 법인 또는 협업체
      - 상표등록증서본과 대형소비처와의 계약서사본등 검증자료 제시
    - 한우사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법인 또는 협업체
    - 조직의 응집력이 좋은 법인 또는 협업체
    - 공동사육장
  - 한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동활용시설 장비등의 지원은 「(4)의 (나)지원조건」의 지원한도에 불구하고 지원가능
  - 협업체의 구성 농가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우 목장」의 대상자 구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 소 내 용	주 관(학 조)
<p>(3) 대상자 선정절차</p> <p>○ 사업희망자는 「(4)의 지원기준」에 따라 별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지역의 축협조합장이 발행하는 사업계획서상 용자금 상당액의 담보능력 여부에 대한 의견서와 축산진흥기금의 사용여부 및 대출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p> <p>- 지역의 축협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수정·보완등에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담보능력에 대한 의견서와 신청시점에서 축산진흥기금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경우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p> <p>- 시장·군수·도지사 및 축협이 사업주체일 경우 직접 계획서 작성</p> <p>○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대상자 구비요건의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p> <p>- 사업계획서상의 지원기준 및 사업금액등이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부적당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p> <p>○ 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제출</p> <p>- 협의회 개최등에 의한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p>	<p>도 지 사 (시장·군수, 축협)</p>

- 의견서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항목별 적정여부와 사업희망자의 사업수행능력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제시
- 지방비 보조예산 확보
  - '93의 경우 추경으로 확보가능한 도 및 사업에 우선 지원(추경 확보 가능여부 명시)
-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후 해당 도와 축협중앙회에 통보

(4) 지원기준

시 장 · 군 수

(가) 지원내용 및 비율

- 기반시설 : 기금보조70%, 지방비보조20%
  - 진입로개설(사육장 10ha당, 진입로 0.5km한 지원), 전리, 용수, 복로개설등
- 사육시설(축사, 창고, 관리동등) 및 장비 : 용자70%
-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보완 : 보조50%, 용자50%
- 사료작물재배지원 : (종자대) 보조80%, 지방비20%  
(비료대) 보조50%
-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 : 보조80%
- 사료작물저장용 사이로시설 : 보조50%, 용자 50%
- 조사료생산장비 : 보조30%, 지방비20%, 용자40%
- 조사료용 볏짚수거기 보급 : 보조50%, 용자40%
- 정화시설 : 용자100%, 간이정화시설은 보조30%, 용자 70%

주 신 내 용	주 관(협 조)
<p>○ 분뇨운반장비 : 보조50%, 용자20%</p> <p>○ 수송차량(생축 및 고기운반용) : 용자70%</p> <p>○ 한우고기전문판매장 개설비 : 용자70%</p> <p>※ 지원단가는 여타 축산사업의 지원단가를 준용하되 필요시 가감할 수 있으며,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한우의 생산 및 유통등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유사한 사업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p> <p>- 전입로 개설은 km당 100백만원, 사육장 ha당 용수는 9,700천원, 목로는 50백만원/km을 상한으로 함.</p> <p>※ <u>개인목장의 경우 기반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분뇨운반장비 지원은 기금보조를 20% 줄이고 용자로 대체함.</u></p> <p>※ 농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영농회사등이 유희전담·한계농지·하천부지등 유희토지를 환용, 실수요자와 조사료생산·공급을 계약할 경우, 생산·저장·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p> <p>(나) 지원조건</p> <p>○ 용자조건</p> <p>- 용자금 금리는 년리 5%, 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장비는 년리 3%</p> <p>용자기간 : 3년기시 7년상환</p>	

추진내용	주관(별조)
<p>○ 용자지원한도</p> <p>- 개인은 1인당 2억원, 법인체는 자본의 200%,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에서 지원</p> <p>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지원 가능</p> <p>※ 축산진흥기금을 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 법인체, 축협등에 대한 추가 지원은 상기 지원 한도내에 기용자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하여 지원가능</p> <p>(5) 사후관리</p> <p>○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산학협동등에 의한 지도방안 강구 추진</p> <p>- 수시방문 지도로 과도한 시설방지 및 사양관리지도</p> <p>○ 행정기관 및 축협은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10년이상 정상적인 사육상태 유지 의무 부여</p> <p>- 보조 및 용자금 교부시 조건 부여</p> <p>- 부여된 조건 위반시 지원금 회수조치</p> <p>○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한우개량에 대한 정부등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경영일지를 기장하도록 지도</p> <p>○ 관할 시·군 및 도에서는 10년간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 축협에서는 사업추진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여신관계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p>	<p>시 장 · 군 수 (축 협)</p>

추진내용	주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요요자금의 10%범위내에서 사업착수금으로 우선 용지 가능</li> <li>- 지원자금의 시용이부는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의 사용 시 내출납외부 및 경과보고</li> <li>○ 축협에서는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 보 및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토록 아브로서 농가에 최대의 편의제공에 노력</li> </ul>	시 장 · 군 수
<p>(6)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은 대상자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우사육 농가에 홍보</li> <li>○ 지도 및 행정기관과 축협등 생산지단체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li> <li>- 행정기관 :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축사건축허가등 제 반사항 심조</li> <li>- 지도기관 : 사양관리기술 및 경영개선 지도</li> <li>- 축협등 생산지단체 :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기자재구매 알선 지도등</li> <li>○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진</li> </ul>	도,                    군 (농촌지도소, 축협)
<p>(7) 사업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희망자 신청마감 : 3. 31일까지</li> <li>○ 농 재출(군→도) : 4. 30</li> <li>○ 내정서 및 내정사업 추천(도→농림수산부) : 5. 31</li> </ul>	시 장 : 군 수